

투자위험등급 :
2등급
[높은 위험]

키움투자자산운용(주)는 투자대상 자산의 종류 및 위험도 등을 감안하여 1등급(매우 높은 위험)에서 5등급(매우 낮은 위험)까지 투자위험등급을 5단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분류기준에 따른 투자신탁의 위험등급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신 후 합리적인 투자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투자설명서

이 투자설명서는 키움 프런티어 배당주 증권 투자신탁 제1호[주식혼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키움 프런티어 배당주 증권 투자신탁 제1호[주식혼합] 수익증권을 매입하기 전에 이 투자설명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 집합투자기구 명칭 키움 프런티어 배당주 증권 투자신탁 제1호[주식혼합](32918)
2. 집합투자업자 명칭 키움투자자산운용 주식회사
3. 판매회사
각 판매회사 본·지점
(판매회사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금융투자협회
(www.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www.kiwoomam.com)의
인터넷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작성기준일 2015년 11월 30일
5. 증권신고서 효력발생일 2015년 12월 18일
6. 모집(매출) 증권의 종류 및 수
(모집(매출) 총액) 투자증권의 수익증권[10조좌]
7. 모집(매출) 기간(판매기간) 일괄신고서를 제출하는 개방형 집합투자기구로 모집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고 계속 모집할 수 있습니다.
8. 집합투자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의 열람장소
[집합투자증권신고서]
전자문서: 금융위(금감원) 홈페이지 → <http://dart.fss.or.kr>
[투자설명서]
전자문서: 금융위(금감원) 홈페이지 → <http://dart.fss.or.kr>
서면문서: 집합투자업자 Tel. 02-789-0300, www.kiwoomam.com
한국금융투자협회 Tel. 02-2003-9000, www.kofia.or.kr
판매회사 집합투자업자 또는 한국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 참조

※ 이 투자설명서는 효력발생일까지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중 일부가 변경될 수 있으며, 개방형 집합투자증권인 경우 효력발생일 이후에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지 아니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집합투자기구 명칭 및 펀드코드(종류형 포함)

집합투자기구 명칭(종류형 명칭)	펀드코드
키움 프런티어 배당주 증권 투자신탁 제 1 호[주식혼합]	32918
A1	73921
C1	52219
C-e	61264
C-W	52278
C-F	AA607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안내>

1. 투자판단시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 또는 간이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이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등급 및 적합한 투자자유형에 대한 기재사항을 참고하고, 귀하의 투자경력이나 투자성향에 적합한 상품인지 신중한 투자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3.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상 기재된 투자전략에 따른 성과목표가 반드시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과거의 투자실적이 장래에도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4. 원본손실위험, 투기등급자산에의 투자 등 집합투자기구와 관련된 투자위험에 대하여는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 또는 간이투자설명서 본문의 투자위험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파생상품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파생상품의 가치를 결정하는 기초변수 등이 예상과 다른 변화를 보일 때에는 당초 예상과 달리 큰 손실을 입거나 원금전체의 손실을 입을 수 있습니다.
6. 판매회사는 투자실적과 무관하며, 특히, 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 등의 판매회사는 단순히 집합투자증권의 판매업무(환매 등 판매행위와 관련된 부가적인 업무포함)만 수행할 뿐 판매회사가 동 집합투자증권의 가치결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7. 집합투자증권은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상품으로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아니하며, 특히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 등에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경우에도 은행예금과 달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8. 투자자가 부담하는 선취수수료 등을 감안하면 투자자의 입금금액 중 실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금액은 작아질 수 있습니다.
9. 집합투자기구가 설정 후 1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설정액이 50억원 미만(소규모펀드)인 경우 분산투자가 어려워 효율적인 자산운용이 곤란하거나 임의해지 될 수 있으니, 투자 시 소규모펀드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소규모펀드 해당여부는 금융투자협회, 판매회사,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목 차]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5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5
2.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5
3. 모집예정금액	5
4. 모집의 내용 및 절차	5
5. 인수에 관한 사항	6
6. 상장 및 매매에 관한 사항	6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7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7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7
3. 집합투자기구의 신탁계약기간	8
4. 집합투자업자	8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8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9
7.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9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10
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위험관리 및 수익구조	12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14
11. 매입, 환매, 전환기준	17
12. 기준가격 산정기준 및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20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22
14.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23
제3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등에 관한 사항	26
1. 재무정보	26
2. 연도별 설정 및 환매현황	28
3.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세전 기준)	29
제4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33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33
2. 운용관련업무 수탁업자에 관한 사항	35
3. 집합투자재산 관리회사에 관한 사항(신탁업자)	35
4. 일반사무관리회사에 관한 사항	35
5.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에 관한 사항	36
6. 채권평가회사에 관한 사항	36
제5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37
1. 수익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37
2.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	39
3.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40
4. 이해관계인 등과의 거래에 관한 사항	43
5. 외국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추가 기재 사항	43
[붙임] 용어풀이	44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명 칭	키움 프런티어 배당주 증권 투자신탁 제1호[주식혼합] (펀드코드: 32918)				
클래스(종류)	Class A1	Class C1	Class C-e	Class C-w	Class C-F
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73921	52219	61264	52278	AA607

2.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 1) 형태별 종류 투자신탁
- 2) 운용자산별 종류 증권(혼합주식형)
- 3) 개방형·폐쇄형 구분 개방형(환매가 가능한 투자신탁)
- 4) 추가형·단위형 구분 추가형(추가로 자금 납입이 가능한 투자신탁)
- 5) 특수형태 표시 종류형(판매보수 등의 차이로 인하여 기준가격이 다른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판매기준>

수익증권은 다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종류별로 판매합니다.

Class 구분	판매 기준
Class A1 수익증권	가입제한 없음, 선취판매수수료 부과
Class C1 수익증권	가입제한 없음
Class C-e 수익증권	온라인(On-Line)계좌를 이용하여 수익증권에 가입하고자 하는 투자자
Class C-W 수익증권	판매회사의 일임형 Wrap계좌를 보유한 자
Class C-F 수익증권	- 법에 의한 집합투자기구(외국법령에 의한 것으로서 집합투자기구의 성질을 가진 것을 포함한다) - 법 시행령 제10조제2항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1-4조에서 정하는 기관투자자 또는 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외국의 법령상 이에 준하는 자를 포함한다) - 10억원 이상 매입한 개인이거나 50억원 이상 매입한 법인 - 특정금전신탁, 보험업법에 의한 일반계정 및 특별계정

주1)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에도 불구하고 투자대상은 여러가지 다양한 자산에 투자될 수 있으며, 자세한 투자대상은 제2부. “투자대상”과 “투자전략”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모집예정금액

이 투자신탁은 10조원까지 모집 가능하며 1차 단위로 모집합니다. 단, 모집기간은 정해지지 않았으므로 계속 모집이 가능합니다.

주1) 모집(판매)기간동안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추가모집(판매)이 가능합니다.

주2) 모집(판매)기간동안 판매된 금액이 일정규모 이하인 경우 이 집합투자증권의 설정이 취소되거나 해지될 수 있습니다.

주3) 모집(판매) 예정금액이 줄거나 모집(판매) 예정기간이 단축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판매회사 및 집합투자업자의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됩니다

4. 모집의 내용 및 절차

- 1) 모집기간 모집 개시 이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추가형으로 계속 모집 및 판매됩니다.
- 2) 모집장소 판매회사 본·지점
- 3) 모집방법 및 절차 판매회사의 영업일에 판매회사의 창구를 통하여 모집 및 판매합니다.

주1) 모집장소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www.kiwoomam.com)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2) 그 모집(매입) 방법 및 내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2부. 11. 매입, 환매, 전환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인수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습니다.
6. 상장 및 매매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습니다.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명 칭	키움 프런티어 배당주 증권 투자신탁 제1호[주식혼합](펀드코드: 32918)				
클래스(종류)	Class A1	Class C1	Class C-e	Class C-w	Class C-F
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73921	52219	61264	52278	AA607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변경시행일	변경 사항
2001.10.04	최초 설정
2005.07.11	투자신탁 명칭 변경 등
2006.07.28	주식형펀드시가총액비중기준일변경 (매년3,6,9,12월말 기준을 그다음 3월간 적용 → 매월말 기준 그다음 1월간 적용)
2006.08.23	멀티클래스로 변경(C-e Class 추가)
2006.11.20	선취판매수수료를 부과하는 클래스 추가
2008.04.30	채권등급(BBB→A-) 및 어음등급(A3→A2-) 하한 변경
2009.05.04	자본시장법에 따른 펀드명칭 변경 등을 포함한 전면개정 (프런티어 배당주 혼합투자신탁 제1호 → 키움 프런티어 배당주 증권 투자신탁 제1호[주식혼합])
2009.05.28	집합투자업자 사명 변경의 건
2009.07.22	책임운용전문인력 변경의 건(강선식 → 박성진) 등
2009.07.27	ETF 투자한도 관련 변경, 책임운용전문인력 관련사항 변경(황아람→강선식) 및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갱신(집합투자업자 요약 재무내용 및 운용자산규모)의 건 등
2010.03.16	책임운용전문인력 변경의 건(박성진→정순호), 이익분배 명확화, 세제 변경에 따른 관련 내용 변경, 자본시장법 시행령(자산운용보고서 및 자산보관·관리보고서) 개정에 따른 관련 내용 변경, 투자신탁의 재무 및 운용실적등에 관한 사항 갱신의 건을 포함한 최근 결산기 정보 반영의 건 등
2010.05.03	Class C1 판매보수를 인하의 건 등(동일한 비율로 매년 인하하여 2013.05.03이후 연 0.9%로 인하)
2010.08.06	책임운용전문인력 변경의 건(정순호→강선식)
2010.10.04	책임운용전문인력 변경의 건(강선식→남궁현(2010.09.17 변경)), 자본시장법 시행령(임의해지) 개정에 따른 관련 내용 변경 등
2011.01.27	투자신탁의 재무 및 운용실적등에 관한 사항 갱신의 건을 포함한 최근 결산기 정보 반영의 건 등
2011.12.06	- 투자신탁 결산으로 인한 신고서(투자설명서) 재무제표 및 운용실적 등 갱신 - 우리은행 일반사무관리부 분사에 따른 일반사무관리회사 변경 (우리은행→우리펀드서비스)
2012.05.03	- Class C-F 추가 - 신탁업자 사명변경(농협협동조합중앙회 → 농협은행) - 당사 투자위험등급 기준 변경 등
2012.10.25	- 책임운용전문인력 변경 (남궁현(주식운용2팀)→김상미(MP운용팀)), 2012.10.12. 변경) - '기업공시서식 기준' 개정에 따른 관련 내용 변경 - 투자신탁 결산으로 인한 신고서(투자설명서) 재무제표 및 운용실적 등 갱신
2013.04.24	- 법 개정에 따른 관련 내용 변경 (공시 및 보고서 등) - 세법 개정에 따른 관련 내용 변경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 인하) - 채권평가회사 추가 (에프엔자산평가)
2014.04.03	- 자본시장법 및 시행령 등의 개정사항 반영 - 투자신탁 결산으로 인한 재무제표 및 운용실적 갱신 등

	- ‘기업공시서식 기준’ 개정에 따른 관련 내용 변경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등)
2014.12.18	- 집합투자업자 명칭 및 이에 따른 투자신탁 명칭 변경(우리 프런티어 배당주 증권 투자신탁 제1호[주식혼합] → 키움 프런티어 배당주 증권 투자신탁 제1호[주식혼합]) - 투자신탁 결산으로 인한 재무제표 및 운용실적 갱신 -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개정사항 반영(2014.10.01) 등
2015.12.18	- <u>운용전문인력 변경의 건(김상미→노신윤(2015.11.27 변경))</u> - <u>투자신탁의 해지에 관한 법 개정사항 반영</u> - <u>세법 개정사항 반영</u> - <u>투자신탁 결산으로 인한 재무제표 및 운용실적 갱신 등</u>

주1) 상기 연혁은 이 집합투자기구의 주요 변동 사항에 대해 일자와 내용을 간략히 기재한 것입니다.

3. 집합투자기구의 신탁계약기간

이 투자신탁은 추가 납입이 가능한 투자신탁으로 별도의 신탁계약기간을 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신탁계약기간은 일반적으로 투자신탁의 존속기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수익자의 저축기간 또는 만기 등의 의미와 다를 수 있습니다.

주1) 관련 법령 또는 집합투자규약상 일정한 경우에는 강제로 해지되거나, 사전에 정한 절차에 따라 임의로 해지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5부. 2. 투자신탁의 해지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집합투자업자

회 사 명	키움투자자산운용 주식회사
주 소 및 연 락 처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4길 18 키움파이낸스스퀘어 (대표전화: 02-789-0300)

주1) 집합투자업자(자산운용회사)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제4부.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2015.11.30. 현재)

1) 운용전문인력

구분	성명	생년	직위	운용현황		주요운용경력 및 이력
				운용중인 다른 집합투자기구수	다른운용 자산규모	
<u>책임운용 전문인력</u>	<u>노신윤</u>	<u>1977</u>	<u>차장</u>	<u>1</u>	<u>18</u>	* 연세대 행정학과 * 한화투자증권 업무개발팀 * 신영증권 상품기획팀 * 삼성생명 변액주식운용부 * 현재 키움투자자산운용 주식운용팀
<u>부책임운용 전문인력</u>	<u>박경식</u>	<u>1973</u>	<u>팀장</u>	<u>24개</u> <u>(팀공동)</u>	<u>18,080억</u> <u>(팀공동)</u>	*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 LG투자신탁운용 * 현재 키움투자자산운용 채권운용2팀장

주1) 이 투자신탁의 운용은 주식운용팀의 노신윤 차장이 담당합니다. “책임운용전문인력”은 이 투자신탁의 운용의사결정 및 운용결과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전문인력을 말하며, “부책임운용전문인력”이란 책임운용전문인력이 아닌 자로서 이 투자신탁의 투자목적 및 운용전략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산에 대한 운용권한을 가진 운용전문인력을 말합니다.

주2) 운용전문인력의 최근 과거 3년 이내에 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 등은 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 홈페이지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3) 운용 중인 다른 집합투자기구 중 성과보수가 있는 집합투자기구의 운용 규모: 1개(254억원)

주4) 위의 집합투자기구 수에는 모자형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2) 운용전문인력 최근 변경 내역

구분	성명	운용기간
책임운용전문인력	박성진	2009.07. ~ 2010.01.
	정순호	2010.01. ~ 2010.08.

	강선식	2010.08. ~ 2010.09.
	남궁현	2010.09. ~ 2012.10.
	김상미	2012.10. ~ 2015.11

주1) 최근 3년간의 책임운용전문인력 변경 내역입니다.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1)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투자신탁, 증권(주식혼합형), 개방형, 추가형, 종류형

2) 종류형 구조

- 이 투자신탁은 판매보수의 차이로 인하여 기준가격이 다르거나 판매수수료가 다른 여러 종류의 집합투자증권을 발행하는 종류형투자신탁으로써 이 투자신탁이 보유한 종류의 집합투자증권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종류별 가입자격에 관한 사항

종류	가입자격	설정일
A1	가입제한 없음, 선취판매수수료 부과	2007-09-20
C1	가입제한 없음	2001-10-04
C-e	전자매체(On-Line)등을 이용하여 가입	2006-10-20
C-W	판매회사의 일임형 wrap계좌를 보유한 자	2005-11-09
C-F	- 법에 의한 집합투자기구(외국법령에 의한 것으로서 집합투자기구의 성질을 가진 것을 포함한다) - 법 시행령 제10조제2항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1-4조에서 정하는 기관투자자 또는 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외국의 법령상 이에 준하는 자를 포함한다) - 10억원 이상 매입한 개인이거나 50억원 이상 매입한 법인 - 특정금전신탁, 보험업법에 의한 일반계정 및 특별계정	미설정

나. 종류별 수수료 및 보수에 관한 사항

종류	수수료		보수 (연간,%)			
	선취판매	환매	판매보수	운용보수	신탁보수	사무관리
A1	납입금액의 1%	없음	0.57	0.45	0.04	0.00
C1	없음	90일미만 이익금의 70%	0.90	0.45	0.04	0.00
C-e	없음	90일미만 이익금의 70%	0.84	0.45	0.04	0.00
C-W	없음	90일미만 이익금의 70%	0.00	0.45	0.04	0.00
C-F	없음	90일미만 이익금의 70%	0.02	0.45	0.04	0.00

※ 2010년 05월 03일부터 Class C1의 판매회사 보수율은 아래와 같이 적용되었습니다.

종류	판매회사보수율(연간,%)			
	2010.05.03~2011.05.02	2011.05.03~2012.05.02	2012.05.03~2013.05.02	2013.05.03 이후
C1	1.012	0.974	0.936	0.900

7.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 이 투자신탁은 본 집합투자계약 제17조에서 정의된 **주식**을 법 시행령 제94조제2항 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합니다.
- 이 투자신탁은 자산총액의 50%이상을 주식에 50%미만을 채권에 투자하여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의 추구를 목적으로 합니다.

* **비교지수: [KOSPI지수 X 40%]+ [KBP 통안증권지수 X 50%] + [Call 지수 X 10%]**

주1) KOSPI: 한국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 내 주식시장에 상장된 모든 종목을 대상으로 산출된 주가지수(지수현황은 <http://www.krx.co.kr>에서 확인가능합니다.)

주2) KBP 통안증권 지수: 한국자산평가에서 발표하는 통안채 시장의 움직임을 나타내는 지표 (지수현황은 <http://www.koreaap.com> 에서 매경 BP 종합 통안증권지수(KBP통합증권지수, Bloomberg ticker: KBPMABIN INDEX)로 조회 가능합니다.)

주3) 비교지수는 펀드설정 초기, 펀드운용개시일전, 펀드가 일정 규모 미만일 경우, 시장 상황 및 펀드 운용전략의 변경, 새로운 비교지수의 등장 및 비교지수 정보 제공이 불완전할 경우 비교지수가 변경되거나, 일정기간 다른 지수로 교체가능 합니다
그러나 상기의 투자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등 이 투자신탁과 관련된 어떠한 당사자도 투자원금의 보장 또는 투자목적의 달성을 보장하지 아니합니다.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1) 투자 대상

투자대상	투자비율 (자산총액대비)	투자대상 및 비율 세부설명
국내주식	50%이상	법 제 4 조제 4 항의 규정에 의한 지분증권, 법 제 4 조제 8 항의 규정에 의한 증권예탁증권 중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법 제 9 조제 15 항제 3 호의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것 및 증권시장에 기업공개를 위하여 발행한 공모주등에 한합니다)
채권	50%미만	법 제 4 조제 3 항의 규정에 의한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말합니다), 사채권(신용평가등급이 A-이상이어야 하며 사모사채권 및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하는 사채 및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은 제외합니다)
자산유동화증권	40%이하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
어음 및 양도성 예금증서	40%이하	법 시행령 제 79 조제 2 항제 5 호에서 정하는 금융기관이 발행·할인·매매·중개·인수 또는 보증하는 어음·채무증서 또는 법 제 4 조제 3 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어음증권으로서 신용등급이 A2- 이상인 것 및 양도성 예금증서
장내파생상품	위험평가액이 10%이하	법 제 5 조제 1 항 및 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장내파생상품
금리스왑거래	채권 또는 채무 증서총액의 100%이하	거래의 상대방과 서로 다른 약정이자를 약정된 시기에 교환하는 거래를 말합니다.
집합투자증권	5%이하 (ETF 30%이하)	- 법 제 110 조에 의하여 신탁회사가 발행한 수익증권, 법 제 9 조제 21 항의 규정에 의한 집합투자증권 - 다만, 법 제 234 조의 규정에 의한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대하여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할 수 있습니다.
환매조건부채권의 매도	증권 총액의 50%이하	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수할 것을 조건으로 매도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증권의 대여	증권 총액의 50%이하	증권을 대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증권의 차입	자산 총액의 20%이하	증권을 차입하는 것을 말합니다.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	법 시행령 제 268 조 제 4 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를 말합니다. 수익증권의 환매를 원활하게 하고 투자대기자금의 활용을 위해 운용	
단기대출,	집합투자업자는 환매를 원활하게 하고 투자대기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에의 예치	필요한 경우 아래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습니다. 1. 단기대출(30일 이내의 금융기관간 단기자금거래에 의한 자금공여를 말합니다) 2. 금융기관에의 예치(만기 1년 이내인 상품에 한합니다)
-----------	---

2) 투자 제한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를 신탁업자에게 지시할 수 없습니다. 다만, 관련 법령 및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구분	투자제한 사항
투자비율 제한에 관한 사항	1.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법 시행령 제 84 조에서 정하는 집합투자업자의 이해관계인에게 다음의 방법으로 운용하는 행위. 다만, 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나 계열회사인 이해관계인과는 다음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없습니다. 가. 법 제 83 조제 4 항에 따른 단기대출 나. 환매조건부매수(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하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2.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의 증권(법 시행령 제 80 조제 3 항에서 규정하는 원화로 표시된 양도성 예금증서, 기업어음증권 외의 어음, 대출채권·예금·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채권(債權)을 포함합니다)에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 중 지분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에탁증권을 포함합니다. 이하 동일합니다.)과 지분증권을 제외한 증권은 각각 동일종목으로 봅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아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 증권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가. 국채증권, 한국은행법 제 69 조에 따른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및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한 채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까지 투자하는 경우 나.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가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합니다) 직접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어음[법 제 4 조제 3 항에 따른 기업어음증권 및 법 시행령 제 79 조제 2 항제 5 호 각목의 금융기관이 할인·매매·중개 또는 인수한 어음만 해당합니다], 법 시행령 제 79 조제 2 항제 5 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어음 또는 양도성 예금증서와 같은 호 가목·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권, 법 시행령제 79 조제 2 항제 5 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채권(모집의 방법으로 발행한 채권만 해당합니다.)또는 어음,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되어 있는 국가가 발행한 채권,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 31 조에 따른 사채 중 후순위 사채권,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법 시행령 제 79 조제 2 항제 5 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주택저당증권을 말한다)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하는 경우 다.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에탁증권을 포함합니다. 이하 동일합니다)의 시가총액이 100 분의 10 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시가총액 비중까지 투자하는 경우. 이 경우 시가총액비중은 거래소가 개설하는 증권시장별로 또는 해외 증권시장별로 매일의 그 지분증권의 최종시가의 총액을 그 시장에서 거래되는 모든 종목의 최종시가의 총액을 합한 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1 개월간 평균한 비율로 계산하며,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그 다음 1 개월간 적용합니다. 3.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으로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총수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4. 법 시행령 제 80 조제 5 항에서 정하는 적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와 장외파생상품을 매매하는 행위 5. 파생상품의 매매와 관련하여 기초자산 중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의 가격변동으로 인한 위험평가액이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 분의 10 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6. 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이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0 분의 100 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7. 같은 거래상대방과의 장외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거래상대방 위험평가액이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 분의 10 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8. 법 시행령 제 86 조에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 집합투자업자의 계열회사가 발행한 증권을 취득하는 행위 9. 투자신탁재산을 그 발행인이 파산하는 때에 다른 채무를 우선 변제하고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채무를 상환한다는 조건이 있는 후순위채권에 투자하는 행위
투자비율 제한의 예외	① 다음의 1 의 기간 또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규약제 18 조제 1 항제 1 호 내지 제 5 호의 규정은 그 투자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다음 제 4 호 및 제 5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비율을 위반한 날부터 15 일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1. 투자신탁 최초설정일부터 1 월간 2. 투자신탁 회계기간 종료일 이전 1 월간 3. 투자신탁 계약기간 종료일 이전 1 월간 4. 3 영업일 동안 누적하여 추가설정 또는 해지청구가 각각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5. 투자신탁재산인 증권 등 자산의 가격변동으로 집합투자규약제 18 조 제 1 항제 1 호 내지 제 5 호의 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 ②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불가피하게 집합투자규약제 18 조제 1 항제 6 호 내지 제 10 호, 제 19 조제 1 항제 2 호 내지 제 3 호, 제 5 호 내지 제 7 호에 따른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 개월까지(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봅니다. 1.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투자대상자산의 가격 변동 2. 투자신탁의 일부해지 3. 담보권의 실행 등 권리행사 4.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합병 5. 그 밖에 투자대상자산의 추가 취득 없이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 ③ 집합투자규약 제 18 조제 1 항제 7 호 및 제 19 조제 1 항제 2 호, 제 5 호 내지 제 7 호의 규정은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부터 1 개월까지는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위험관리 및 수익구조

※ 이 투자신탁의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가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 이 투자신탁의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는 시장상황의 변동 또는 기타 사정에 의하여 사전 통지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변경된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내용은 변경 등록(또는 정정신고) 후 수시공시 절차에 따라 공시될 예정입니다.

1) 투자 전략 및 위험관리

가. 투자전략

① 주식에 대한 투자전략

- 법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분증권인 주권, 신주인수권이 표시된 것, 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출자증권(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이 발행한 것 및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기업공개를 위하여 발행한 공모주에 한합니다.)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50% 이상을 투자합니다

② 채권 등에 대한 투자전략

-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말합니다), 사채권(신용평가등급이 A- 이상이어야 하며 사모사채 및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하는 사채 및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은 제외합니다) (이하 “채권”이라 합니다) 등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50% 미만을 투자합니다.

- 법 시행령 제 79 조제 2 항제 5 호에서 정하는 금융기관이 발행·할인·매매·중개·인수 또는 보증하는 어음·채무증서 또는 법 제 4 조제 3 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어음증권으로서 신용등급이 A2- 이상인 것(이하 “어음”이라 합니다) 및 양도성예금증서 등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40% 이하를 투자합니다.
-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이하 “자산유동화증권”이라 한다) 등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40% 이하를 투자합니다.

- ③ 이 투자신탁은 국내주식 및 채권 등에 주로 투자하는 증권투자신탁[주식혼합]으로서 채권투자를 통한 자본소득, 이자소득과 더불어 주식투자를 통한 자본소득, 배당소득을 추구합니다. 특히 안정적인 성장세를 유지하면서 배당을 실시해 주주 이익환원을 중시하는 기업의 주식에 주로 투자하여 비교지수대비 초과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관련 시장의 변동 등으로 인하여 이 투자신탁의 투자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 ④ 이 투자신탁은 비교지수대비 초과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능동적인(Active) 운용전략을 채택하며, 종목선정과정에서 Top-down 방식과 Bottom-up 방식을 혼용합니다.



- ⑤ 이 투자신탁은 시장상황에 따른 신속하고 적극적인 매매전략을 구사하므로 빈번한 매매로 인하여 매매비용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매매비용의 증가는 투자신탁의 비용의 증가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 ⑥ 비교지수
- 이 투자신탁의 운용실적 비교를 위해 비교지수를 ‘[KOSPI지수 X 40%]+ [KBP 통안증권지수 X 50%] + [Call 지수 X 10%]’로 정했습니다.

주1) 비교지수는 펀드설정 초기, 펀드운용개시일전, 펀드가 일정 규모 미만일 경우, 시장 상황 및 펀드 운용전략의 변경, 새로운 비교지수의 등장 및 비교지수 정보 제공이 불완전할 경우 비교지수가 변경되거나, 일정기간 다른 지수로 교체가능 합니다.

나. 위험관리 전략

- ① 투자신탁 설정 초기설정금액, 시장여건, 운용상의 기술적 여건을 감안하여 시장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투자대상자산의 편입비중을 조절할 계획입니다.
- ② 위험관리를 위하여 투자환경 및 투자대상자산과 관련한 변화가 발생 시 탄력적으로 포트폴리오 조정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 ③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정상적인 운용이 어려울 정도로 현저히 낮은 경우는 투자신탁이 해지될 수도 있습니다.

2) 수익구조

- ‘키움 프런티어 배당주 증권 투자신탁 제1호[주식혼합]’은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50% 이상을 국내주식에 주로 투자하되,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50% 미만을 국내채권 등에 투자하여 투자증권 등의 가격변동에 따른 손익을 추구하는 증권투자신탁입니다. 따라서, 투자한 자산의 가격변동에 따라 투자자의 수익률이 결정됩니다.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이 투자신탁은 원본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합니다. 집합투자업자나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은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의 예금과 달리 실적에 따른 손익을 취득하므로 은행 등에서 판매하는 경우에도 예금보험공사 등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다음 투자위험은 작성일 기준으로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위험을 기재한 것이며, 발생 가능한 모든 위험을 기재한 것이 아님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또한, 향후 운용과정 등에서 현재로는 예상하기 어려운 위험이 발생하거나 현재 시점에서는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기재에 누락되어 있는 위험의 정도가 커져 그 위험으로부터 심각한 손실이 발생할 수 도 있음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1) 일반위험

구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투자원본에 대한 손실위험	이 투자신탁은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 원리금 전액이 보장 또는 보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하며, 집합투자업자나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또한 환매수수료가 부과되는 기간 중에 환매한 경우에는 환매수수료의 부과로 인해 투자손실이 발생하거나 손실의 폭이 더욱 확대될 수 있습니다.
주식등 가격변동위험	이 투자신탁은 국내 주식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등에 주로 투자하기 때문에, 동 주식의 가격변동으로 인한 손실위험에 노출됩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은 국내의 지정학적 위험 및 투자 증권의 가치에 부정적으로 작용하는 관련 증권시장의 법령 및 제도의 급격한 변화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금리변동위험	투자적격등급 이상의 신용등급을 가진 채무증권등에 투자할 예정이나, 투자적격등급의 채무증권등도 또한 리스크가 존재하고 채무증권등의 금리변동에 따라 채무증권등의 가격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자율이 하락하면 채무증권등의 가격 상승에 의한 자본이득이 발생하고 이자율이 상승하면 자본손실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채무증권등을 만기까지 보유하지 않고 중도에 매도하는 경우에는 시장상황에 따라 손실 또는 이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파생상품 투자위험	파생상품(선물, 옵션에의 투자)은 작은 증거금으로 거액의 결제가 가능한 지렛대 효과(레버리지 효과)로 인하여 기초자산에 직접 투자하는 경우에 비하여 높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재투자위험	이 투자신탁에서 투자하는 채권의 가격은 채권만기 이전에 발생하는 이자수령액이 현재의 채권시장 이자율과 같은 이자율로 재투자 되어진다고 가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채권시장 이자율이 항상 변하고 있어, 만일 이자 수령시의 시장이자율이 당초의 시장 이자율보다 낮아질 경우 채권투자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이 예상수익보다 적어질 수 있습니다.
정기예금 및 RP매입 위험	이 투자신탁에서 투자하는 정기예금 또는 RP매입과 같이 기간이 정해져 있는 유동성 자산의 경우 시장매각이 제한되고, 중도해지 시 약정이익의 축소 적용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투자자는 환매연기로 기회비용이 발생함과 동시에 약정이익 축소 적용 등으로 당초 기대했던 수익 보다 적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2) 특수위험

구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거래상대방 및 신용위험	보유하고 있는 국내외 유가증권 등을 발행한 회사가 신용등급의 하락 또는 부도 등과 같은 신용사건에 노출되는 경우 그 유가증권 등의 가치가 하락할 수 있습니다. 또한, 투자대상종목 발행 회사의 영업환경, 재무상황 및 신용상태의 악화 등으로 신용등급 하락 혹은 부도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편입한 채권 등의 가치가 하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용등급 변동은 없을지라도 신용스프레드 확대 등으로 인해 가치에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시장 전체적으로 신용위험에 대해 민감하게 될 경우 개별

	종목의 신용위험 변동과는 별개로 신탁재산의 가치가 하락할 수 있습니다.
포트폴리오 집중위험	당해 투자신탁은 주식에 투자시 주로 배당주에 투자함으로써 다른 투자신탁에 비해 제한된 수의 종목에 투자하게 되고, 또한 당해 투자신탁의 가치는 한국종합주가지수의 변동과는 별개로 투자대상인 배당주등의 가격변동에 따라 더 민감하게 변동됩니다.
환매조건부채권 매도 및 운용에 대한 위험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환매조건부채권(RP)은 단기 금융상품의 일종으로 일정기간이 지난 후 채권을 다시 매수할 것을 원칙으로 현재 채권을 매도하는 거래계약입니다. 따라서 이 상품은 단기간에 자금을 조달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기에 레버리지 위험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환매조건부채권 매도에 의한 자금조달로 금융상품을 매입할 경우 자금의 조달과 운용에 대한 기간의 불일치, 금리 불일치 등 미래의 경제 상황에 따라 조달금리가 운용금리보다 높아져 투자원금에 손실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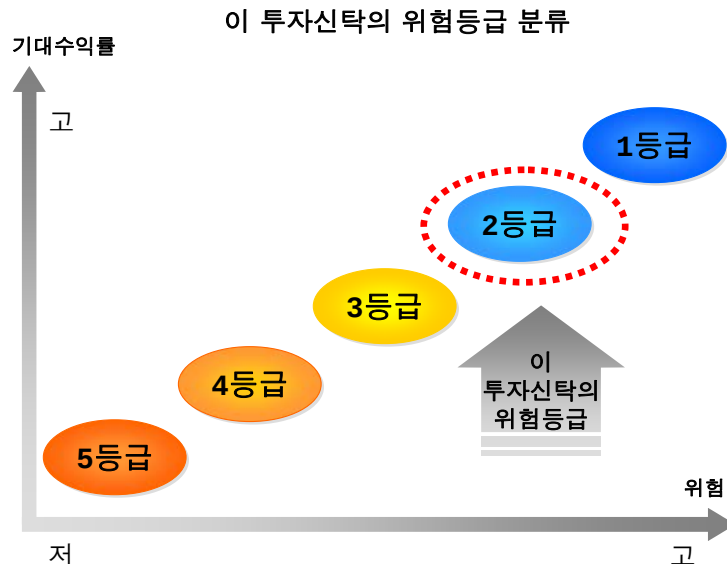
3) 기타투자위험

구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유동성 위험	증권시장규모 등을 감안할 때 거래량이 풍부하지 못한 종목에 투자할 경우 투자대상종목의 유동성 부족에 따른 환금성의 결여가 투자신탁재산 가치의 하락을 초래할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순자산가치 변동위험	환매청구일과 환매 기준가격 적용일이 다르기 때문에 환매청구일로부터 환매일 기준가격 적용일까지의 투자신탁재산의 가치변동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이로 인하여 실제 환매대금은 환매청구일의 예상금액과 차이가 날 수 있으며, 환매청구일의 평가액 대비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량환매 위험	이 투자신탁에 집중된 대량환매가 발생할 경우에는 환매자금을 우선적으로 조달해야 합니다. 이로 인하여 운용전략을 유지하거나 효과적으로 운용전략을 구사 하는데 있어 일부 제약을 받을 수 있고, 이는 환매된 집합투자증권 및 잔존 집합투자증권의 가치에 손실을 초래하여 투자자의 투자원금 손실을 초래 할 수 있습니다.
환매연기위험	환매금지형 집합투자기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신탁재산의 운용에 있어 예상치 못한 정치, 경제상황 및 정부의 조치, 세제의 변경 등에 따라 신탁재산 운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환매에 대응하기 위한 자산의 중도매각이 어려워지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환매가 연기될 수 있습니다. 또한 환매연기의 사유가 해소된다 하더라도 환매에 응하기 위한 자산의 중도매각 및 환매 연기 중에 발생한 기타 사유 및 상황등으로 인하여 추가적인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환매가 연기되는 사유에 대해서는 본 투자설명서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의 '11. 매입, 환매, 전환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운용실무상 위험 (기준가격 오류 등)	집합투자업자는 운용실무상 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이나, 예금이나 보험과는 달리 집합투자기구 운용구조는 복잡한 결제과정 및 현금 운용과정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주문 및 결제상 오류 등이 뜻하지 않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운용실무상 오류는 기준가격 오류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집합투자업자 등은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권리행사 위험	이 투자신탁을 운용함에 있어서 보유증권에 대하여 재량권을 가지고 의결권이나 매수청구권 등 기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권리행사와 관련하여 집합투자재산의 경제적 가치를 증대시키고 투자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신의성실을 다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리행사 결과가 집합투자재산의 가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예상배당 위험	이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증권에 대하여 배당락 기준으로 각 종목별 예상배당액을 추정하여 당해 투자신탁의 기준가격에 반영합니다. 이 때 예상 배당금액은 추후 주주총회에서 확정되는 실제 배당금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확정된 실제 배당금액이 예상 배당금액 보다 적어질 경우 투자신탁의 가치하락이 있을 수 있습니다.
거래중지 위험	이 투자신탁이 보유한 증권은 증권시장의 폐장, 휴장 또는 전산오류, 천재지변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매매거래가 중지될 수 있고 합병, 분할 등과 같은 기업행위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해당증권의 거래가 중지될 수 있습니다. 해당 증권은 이 과정에서 평가가 중지되고 추후 거래가 재개되어 다시 평가가 이루어질 때까지 적절하게 가치를 반영시키지 못할 수 있으며 평가가 재개될 때 일시에 가격이 반영됨에 따라 수익률 변동이 크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집합투자기구 해지(해산)의 위험	투자신탁을 설정한 후 1년 경과시점에서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또는 투자신탁이 설정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집합투자업자가 투자신탁을 해지하거나, 투자회사가 최저순자산액이 10억원 미달하고 3개월이 경과될 때까지 순자산 미달상태가 계속되는 경우 금융위원회가 등록을 취소하는 등의 사유로 투자자의 동의 없이 해당 집합투자기구가 해지 또는 해산될 수 있습니다.
세금 관련 위험	투자에 따른 손익에 대한 세금부과 방법이나 기준은 정부의 정책적 판단 등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특히 투자자의 지위에 따라 각기 다른 과세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과세에 관한 사항은 투자자 본인의 재산상태 등을 고려하시어 반드시 세무전문가의 조언 등 추가적인 확인을 권장합니다. 과세당국에서 인식하는 투자에 따른 손익은 세금을 내야 하는 과세대상자산에서 발생한 손익과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비과세대상자산에서 발생한 손익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비과세손익은 수익이 있더라도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손해를 보더라도 이를 손실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에 따라 비과세대상자산에서 손실을 본 경우라도 과세대상자산에서는 발생한 수익이 있다면 결과적으로 전체 투자결과가 손실이 발생한 경우라도 세금을 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과세대상자산의 예 : 해외투자시 환차손익, 채권투자시 이자수익 등 *비과세대상자산의 예 : 국내 상장주식 매매차익 등

4)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 이 투자신탁이 주로 투자하게 되는 주식 및 채권은 채권에만 투자하는 것에 비하여 가격변동성이 큰 위험이 있으므로 **5등급 중 2등급에 해당되는 수준(높은 위험 수준)**의 투자위험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는 회사채등에 투자하는 채권형 증권투자신탁이나, 국내 국공채에 투자하는 국공채형 증권투자신탁 등보다 훨씬 높은 위험을 갖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 따라서 이 투자신탁은 여유자금으로 투자하여 국내의 경제여건의 변화와 채권 및 주식의 가치변동이 상관관계가 있음을 이해하며 주식 및 채권과 관련된 높은 수준의 투자위험을 감내할 수 있고 투자원본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위험을 잘 아는 장기 투자자에게 적합합니다.



<투자위험 등급 기준>

구분	분류기준	위험평가 점수	집합투자기구 예시
Level 1	매우 높은 위험	20점미만	- 주식 등에 집합투자규모의 약 60% 이상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다만, Level2에서 지정한 인덱스 운용전략 주식형 집합투자기구는 제외) - 원금비보장형 중 최대손실가능비율이 투자원금대비 (-15%) 이상인 구조화상품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 부동산실물(상가 등)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개발형/임대형 포함)
Level 2	높은 위험	20점이상	- 주식 등에 집합투자규약상 최대 50%이상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주식혼합) - 국내 주식시장 지수를 추적 대상으로 하는 인덱스 운용전략 주식형 집합투자기구 및 KOSPI200 지수를 추적 대상으로 하는 인덱스 운용전략 주식파생형 집합투자기구. 다만,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ETF)와 파생-전환형 집합투자기구는 제외 - 원금비보장형 중 최대손실가능비율이 투자원금대비 (-15%) 미만인 구조화상품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Level 3	중간 위험	40점이상	- 주식 등에 집합투자규약상 최대 50%미만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채권혼합) - 최대손실가능비율이 투자원금대비 0% 이하인 구조화상품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 집합투자규약상 하이일드 채권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Level 4	낮은 위험	60점이상	- 국공채 및 투자자격등급(BBB-이상) 채권에 최소60%이상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 장래차익거래목적 등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Level 5	매우 낮은 위험	80점이상	- 모든 유형의 MMF - 국공채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주1) 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는 가장 위험이 높아 위험평가점수가 낮은 1등급에서 위험평가점수가 높은 5등급까지 5단계로 펀드의 위험수준을 분류하고 있습니다.

※ 상기의 투자위험등급은 집합투자업자의 분류기준에 의한 등급으로, 판매회사에서 제시하는 위험등급과는 상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투자신탁을 가입하시기 전에 해당 판매회사의 투자위험등급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1. 매입, 환매, 전환기준

1) 매입

가. 매입방법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은 판매회사 영업시간 중 판매회사 창구에서 직접 매입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판매회사에서 온라인 판매를 개시하는 경우, 온라인을 통한 매입도 가능합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의 매입시 자동이체를 통한 자금납입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나. 종류별 가입자격

이 투자신탁의 가입가능한 수익증권의 종류 및 가입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Class 구분	판매 기준
Class A1 수익증권	가입제한 없음, 선취판매수수료 부과
Class C1 수익증권	가입제한 없음
Class C-e 수익증권	온라인(On-Line)계좌를 이용하여 수익증권에 가입하고자 하는 수익자
Class C-W 수익증권	판매회사의 일임형 Wrap계좌를 보유한 자
Class C-F 수익증권	- 법에 의한 집합투자기구(외국법령에 의한 것으로서 집합투자기구의 성질을 가진 것을 포함) - 법 시행령 제10조제2항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1-4조에서 정하는 기관투자자 또는 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외국의 법령상 이에 준하는 자를 포함) - 10억원 이상 매입한 개인이거나 50억원 이상 매입한 법인 - 특정금전신탁, 보험업법에 의한 일반계정 및 특별계정

다. 매입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 매입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은 아래와 같으며, 기준시점은 판매회사의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거래전표에 표시된 시간으로 구분하여 처리합니다.

① 오후 3시 이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제2영업일(D+1)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

② 오후 3시 경과 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제3영업일(D+2)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



③ 이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는 날의 기준가격은 1,000원으로 합니다.

2) 환매

가. 수익증권의 환매

-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은 판매회사 영업시간 중 판매회사 창구에서 직접 환매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판매회사에 따라 인터넷에서 온라인 환매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나. 환매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환매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은 아래와 같으며, 기준시점은 판매회사의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거래전표에 표시된 시간으로 구분하여 처리합니다.

① 오후 3시 이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환매를 청구한 날로부터 제2영업일(D+1)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4영업일(D+3)에 관련세금등을 공제한 후 판매회사를 경유하여 환매대금을 지급합니다.

② 오후 3시 경과 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환매를 청구한 날로부터 제3영업일(D+2)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4영업일(D+3)에 관련세금등을 공제한 후 판매회사를 경유하여 환매대금을 지급합니다.



③ 판매회사가 해산·인가취소, 업무정지, 기타 법 시행령 제253조에서 정하는 사유(이하 “해산등”)로 인하여 환매청구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 시행규칙 제23조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집합투자업자에 직접 청구할 수 있으며, 집합투자업자가 해산 등으로 인하여 환매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탁업자에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 환매수수료

- 이 투자신탁은 장기투자 목적으로 수익증권의 보유기간에 따라 환매수수료를 차등부과하며, 부과된 수수료는 투자신탁의 재산으로 편입됩니다.

구분		지급비율		비고 (지급시기)
종류		Class A1	Class C1, C-e, C-W, C-F	
환매수수료	90일 미만 환매시	-	이익금의 70%	환매시

라. 매입청구 및 환매청구의 취소(정정) 등

-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의 매입청구 및 환매청구의 취소 또는 정정은 매입청구일 및 환매청구일 15시[오후 3시] 이전까지만 가능합니다. 다만, 15시[오후 3시] 경과 후 매입청구 및 환매청구를 한 경우에는 당일 중 판매회사의 영업가능 시간까지만 매입 또는 환매의 취소 또는 정정이 가능합니다.

기준시점은 판매회사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거래전표에 표시된 시간으로 구분하여 처리합니다.

마. 수익증권의 일부환매

- 수익자는 보유한 수익증권 좌수 중 일부에 대하여 환매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현물보유 수익자가 수익증권의 일부에 대한 환매를 청구한 경우 판매회사는 그 수익증권을 환매하고, 잔여증권에 대하여는 새로운 수익증권을 교부합니다.

바. 수익증권의 환매연기

- ① 집합투자계약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증권의 환매에 응하여야 하는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가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환매일에 환매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증권의 환매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 투자신탁재산의 처분이 불가능하여 사실상 환매에 응할 수 없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
 - 뚜렷한 거래부진 등의 사유로 투자신탁재산을 처분할 수 없는 경우
 - 증권시장이나 해외 증권시장의 폐쇄·휴장 또는 거래정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투자신탁재산을 처분할 수 없는 경우
 -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수익자간의 형평성을 해칠 염려가 있는 경우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
 - 부도발생 등으로 인하여 투자신탁재산을 처분하여 환매에 응하는 경우에 다른 수익자의 이익을 해칠 염려가 있는 경우
 -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자산의 시가가 없어서 환매청구에 응하는 경우에 다른 수익자의 이익을 해칠 염려가 있는 경우
 - 대량의 환매청구에 응하는 것이 수익자간의 형평성을 해칠 염려가 있는 경우
 - 환매를 청구받거나 요구받은 판매회사·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 등이 해산등으로 인하여 수익증권을 환매할 수 없는 경우
 - 위의 사유들에 준하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환매연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유
- ② ①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증권의 환매를 연기한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환매를 연기한 날부터 6주 이내에 수익자총회를 개최하여 다음의 사항을 결의하여야 합니다.
 - 환매를 재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환매대금의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환매연기를 계속하려는 경우에는 환매연기기간 및 환매를 재개할 때의 환매대금의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일부환매를 하는 경우에는 환매연기의 원인이 되는 자산의 처리방법
- ③ 환매연기기간 중에는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발행 및 판매를 할 수 없습니다.
- ④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총회에서 수익증권의 환매에 관한 사항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환매에 관하여 정한 사항의 실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환매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 ⑤ 수익자총회에서 환매에 관한 사항이 결의되거나 환매를 계속 연기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지체 없이 다음의 사항을 수익자 및 판매회사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 수익자총회에서 환매에 관한 사항을 결의한 경우
 - 환매에 관하여 결의한 사항
 - 환매가격
 - 일부환매의 경우에는 그 뜻과 일부환매의 규모
 - 환매연기를 계속하는 경우
 - 환매를 연기하는 사유
 - 환매를 연기하는 기간
 - 환매를 재개하는 경우 환매대금의 지급방법
 - 환매를 재개하는 경우에 환매가격 및 환매대금의 지급시기
 - 일부환매의 경우에 그 뜻과 일부환매의 규모
- ⑥ 환매연기사유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해소되어 환매를 재개할 수 있을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환매가 연기된 수익자 및 판매회사에 대하여 환매한다는 뜻을 통지하고 다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환매대금을 지급합니다.
 - 환매연기 수익자총회일 이후에 환매를 재개하는 경우: 수익자총회에서 정한 바에 따라 환매대금 지급

- 환매연기 수익자총회의 개최 전에 환매를 재개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가 정하는 바에 따라 환매대금 지급.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환매연기 수익자총회를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⑦⑤ 및 ⑥의 규정에 의한 통지는 서면 또는 컴퓨터통신으로 하여야 하며, 집합투자업자는 그 통지를 한국예탁결제원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 ⑧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의 일부가 ①에 의한 환매연기사유에 해당하거나 수익자총회(환매연기총회)에서 일부환매를 결의하는 경우 환매연기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산(이하 “정상자산”이라 합니다)에 대하여는 수익자가 보유하는 수익증권의 지분에 따라 환매에 응할 수 있습니다.
- ⑨⑧의 규정에 따라 일부환매가 결정된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가 일부환매를 결정한 날 (환매연기 총회에서 일부환매를 결의한 경우에는 그 날)의 전일을 기준으로 환매연기의 원인이 되는 자산을 정상자산으로부터 분리하여야 합니다.
- ⑩집합투자업자는 ②의 규정에 따라 환매연기사유에 해당하는 자산을 정상자산으로부터 분리하여 동 환매연기사유에 해당하는 자산만으로 별도의 투자신탁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익자는 이 투자신탁 수익권의 보유좌수에 따라 분리된 별도의 투자신탁의 수익권을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 ⑪집합투자업자는 ⑩의 규정에 따라 정상자산으로 구성된 투자신탁에 대하여는 집합투자규약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기준가격을 산정하여 수익증권을 발행 및 판매할 수 있습니다.
- ⑫집합투자업자는 일부환매가 결정된 경우에는 관련내용을 지체 없이 수익자, 신탁업자 및 판매회사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판매회사는 통지받은 내용을 본·지점에 게시하여야 합니다.
- ⑬집합투자업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규약 제26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환매청구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일정한 날을 정하여 수익자명부에 기재된 수익자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 보도록 한 경우로서 이 일정한 날의 전전영업일(15시 경과 후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 전전영업일)과 그 권리를 행사할 날까지의 사이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
 - 법령 또는 법령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환매가 제한되는 경우

12. 기준가격 산정기준 및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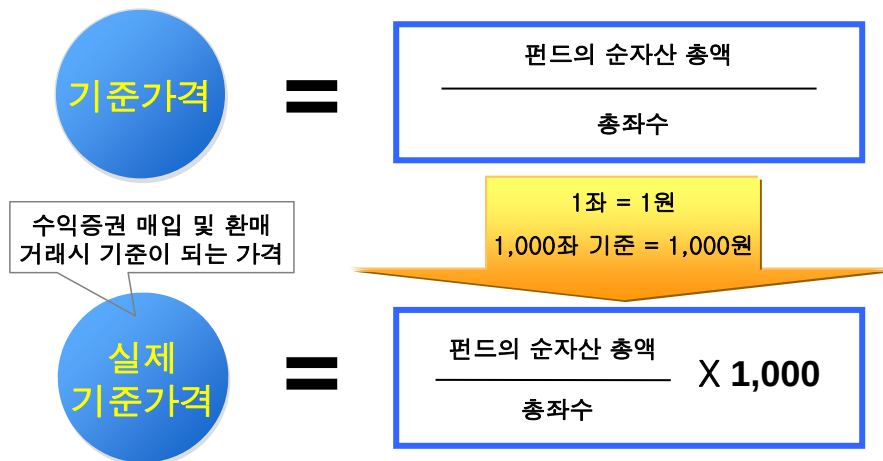
1) 기준가격의 산정 및 공시

구분	내용
산정방법	당일 공고되는 기준가격은 기준가격의 공고·게시일 전날의 대차대조표상에 계상된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순자산총액)을 그 공고·게시일 전날의 수익증권 총좌수로 나누어 산정하며, 1,000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합니다.
산정주기	기준가격은 매일 산정합니다. 다만 수익자가 없는 종류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은 산정·공지하지 아니합니다.
공시시기	산정된 기준가격(모투자신탁의 기준가격 포함)을 매일 공고·게시합니다. 다만, 공휴일, 국경일 등은 기준가격이 공시되지 않습니다.
공시방법 및 장소	판매회사 영업점, 집합투자업자(www.kiwoomam.com) · 판매회사 · 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의 인터넷 홈페이지

주1) 종류형집합투자기구의 경우 클래스별 부가되는 보수 및 수수료 등의 차이로 인하여 클래스별로 기준가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2) 해외의 자산에 투자하는 펀드의 경우 기준가격이 산정·공시되지 않는 날에도 해외시장의 거래로 인한 자산의 가격변동으로 인하여 집합투자재산의 가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기준가격 산정



2) 집합투자재산의 평가방법

- 집합투자재산의 평가는 관련법령 및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에 따라 평가하되, 평가일 현재 신뢰할 만한 시가가 없는 경우에는 공정가액으로 평가합니다.
-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법령 및 규정에 의한 방법에 따라 평가위원회(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합니다. 또한,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대한 평가가 공정하고 정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와 절차에 관한 기준(집합투자재산평가기준)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 ① 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②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의 일관성 유지에 관한 사항
- ③ 집합투자재산의 종류별로 해당 재산의 가격을 평가하는 채권평가회사를 두는 경우 그 선정 및 변경과 해당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의 적용에 관한 사항 등

※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 구성 및 업무

- 구성 :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업무 담당임원,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업무 담당임원, 준법감시인 등
- 업무 : 집합투자재산에 대한 평가를 공정하고 정확하게 하기 위하여 집합투자재산 평가에 대한 필요사항을 의결함

-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자산은 그 종류별로 다음과 같이 평가합니다.

대상자산	평가방법
① 상장주식	평가기준일에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
② 비상장 주식	취득원가 또는 채권평가회사·공인회계사법에 의한 회계법인·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신용평가업무에 대한 허가를 받은 자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③ 장내파생상품	그 장내파생상품이 거래되는 증권시장 등이 발표하는 가격
④ 장외파생상품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 또는 당해 장외파생상품 발행 또는 계산회사가 제시하는 가격에 기초하여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에서 결정한 가격
⑤ 상장채권	평가기준일에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를 기준으로 2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3월간 계속 매월 10일 이상 증권시장에서 시세가 형성된 채권에 한정
⑥ 비상장채권	2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을 기초로 한 가격 (⑤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상장채권을 포함)
⑦ 기업어음 또는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무증서	2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을 기초로 한 가격

⑧ 집합투자증권	평가기준일에 공고된 기준가격 또는 집합투자재산 평가위원회가 정하는 가격. 다만, 상장된 집합투자증권은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
----------	--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 이 투자신탁은 운용 및 판매 등의 대가로 수수료 및 보수를 지급하게 되며, 가입자격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보수 및 수수료 등의 차이가 있습니다.
- 이 투자신탁의 수익자는 판매보수와 관련하여 수익증권의 판매회사(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로부터 해당 투자신탁의 수익자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용역의 대가에 관한 내용이 기재된 자료를 교부받고 설명을 들으셔야 합니다.

1) 수익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종류	가입자격	구분	부과비율 (또는 부과금액)	부과시기
A1	가입제한 없음, 선취판매수수료 부과	선취판매수수료	납입금액의 1.00%	매입시
		후취판매수수료	-	환매시
		전환수수료	-	전환시
		환매수수료	-	환매시
C1	가입제한 없음	선취판매수수료	-	매입시
		후취판매수수료	-	환매시
		전환수수료	-	전환시
		환매수수료	90 일 미만 이익금의 70%	환매시
C-e	온라인계좌를 이용하여 수익증권에 가입하고자 하는 수익자	선취판매수수료	-	매입시
		후취판매수수료	-	환매시
		전환수수료	-	전환시
		환매수수료	90 일 미만 이익금의 70%	환매시
C-W	판매회사의 일임형 Wrap 계좌 보유	선취판매수수료	-	매입시
		후취판매수수료	-	환매시
		전환수수료	-	전환시
		환매수수료	90 일 미만 이익금의 70%	환매시
C-F	주 1) 참조	선취판매수수료	-	매입시
		후취판매수수료	-	환매시
		전환수수료	-	전환시
		환매수수료	90 일 미만 이익금의 70%	환매시

주1) Class C-F 수익증권의 가입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에 의한 집합투자기구(외국법령에 의한 것으로서 집합투자기구의 성질을 가진 것을 포함합니다)
2. 법 시행령 제10조제2항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1~4조에서 정하는 기관투자자 또는 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외국의 법령상 이에 준하는 자를 포함합니다)
3. 10억원 이상 매입한 개인이거나 50억원 이상 매입한 법인
4. 특정금전신탁, 보험업법에 의한 일반계정 및 특별계정

2)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클래스 (종류)	지급비율(연간, %)							
	집합투자 업자보수	판매회사 보수	신탁업자 보수	일반사무 관리회사 보수	기타비용	총보수 · 비용	합성 총보수 · 비용(피투 자 집합투자 기구 보수 포함)	증권 거래비용

키움 프런티어 배당주 증권 투자신탁 제1호[주식혼합]

A1	0.45	0.57	0.04	0.00	0.0046	1.0646	-	0.4990
C1	0.45	0.90	0.04	0.00	0.0048	1.3948	-	0.4994
C-e	0.45	0.84	0.04	0.00	0.0042	1.3342	-	0.5021
C-W	0.45	0.00	0.04	0.00	0.0024	0.4924	-	0.0000
C-F	0.45	0.02	0.04	0.00	0.0048	0.5148	-	0.4994
지급시기	매3개월/ 사유발생 시	매3개월/ 사유발생 시	매3개월/ 사유발생 시	매3개월/ 사유발생 시	사유발생 시	매3개월/ 사유발생 시	-	사유발생 시

※ 2010년 05월 03일부터 Class C1의 판매회사 보수율은 아래와 같이 적용되었습니다.

종류	판매회사보수율(연간,%)			
	2010.05.03~2011.05.02	2011.05.03~2012.05.02	2012.05.03~2013.05.02	2013.05.03 이후
C1	1.012	0.974	0.936	0.900

주1) 기타비용은 이 투자신탁에서 경상적, 반복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증권거래비용 및 금융비용 제외)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회계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직전 회계연도의 기타비용 비율을 추정치로 사용하며, 회계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작성일까지의 기타비용을 연환산하여 추정치로 사용하므로 실제 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직전 회계연도 : 2014.10.04 ~ 2015.10.03]

주2) 증권거래비용은 회계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직전 회계연도의 증권거래비용 비율을 추정치로 사용하며, 회계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작성일까지의 증권거래비용 비율을 연환산하여 추정치로 사용하므로 실제 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직전 회계연도 : 2014.10.04 ~ 2015.10.03]

주3) 총보수·비용 비율은 이 투자신탁에서 지출되는 보수와 기타비용 총액을 순자산 연평잔액(보수·비용 차감후 기준)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1,000만원을 투자할 경우 수익자가 부담하게 되는 수수료 및 보수·비용>

(단위 : 천원)

구분	투자기간	1 년후	3 년후	5 년후	10 년후
A1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207	440	696	1,458
C1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143	451	790	1,798
C-e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137	431	756	1,720
C-W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50	159	279	635
C-F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53	166	292	664

주1) 수익자가 1,000만원을 투자했을 경우 직·간접적으로 부담할 것으로 예상되는 수수료 또는 총보수·비용(기타비용 포함)을 누계액으로 산출한 것입니다.

주2) 이익금은 모두 재투자하며, 연간 투자수익률은 5%, 판매수수료 및 총보수·비용 비율은 일정하다고 가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 수익자가 부담하게 되는 보수 및 비용은 기타비용의 변동, 투자신탁 순자산총액의 변동, 보수의 인상 또는 인하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3) 종류별로(A1,C1) 총보수·비용 비율이 일치하는 시점은 대략 3년이 되는 시점이나 추가납입 또는 보수변경 등에 따라 일치하는 시점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14.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1) 이익배분

-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을 투자신탁 회계기간 종료일 익영업일에 분배하며 그 이익금을 수익자에게 현금 또는 수익증권으로 분배합니다. 다만, 법 제242조에 따른 이익금이 '0'보다 적은 경우에는 분배를 유보합니다.

가. 이익분배금에 의한 수익증권 매수

- 수익자는 수익자와 판매회사간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이익분배금에서 세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분배금 지급일의 기준가격으로 당해 투자신탁의 새로운 수익증권을 매수합니다.

- 이익분배금으로 수익증권을 매수하는 경우 판매회사는 수익자별 매수 수익증권의 합계수량을 집합투자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당해 수익증권 매수금액의 납입이

완료된 때에 집합투자계약 제10조제1항의 방법으로 수익증권을 발행하여야 합니다.

나. 상환금등의 지급

-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기간이 종료되거나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지체없이 신탁업자로 하여금 투자신탁원본의 상환금등을 판매회사를 경유하여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 판매회사는 신탁업자로부터 인도받은 상환금 등을 지체없이 수익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 집합투자업자가 집합투자계약 제 45조의 규정에 따라 이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수익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 투자신탁재산인 자산으로 수익자에게 상환금등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인 증권 등의 매각지연등의 사유로 인하여 상환금등의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 이익분배금 및 상환금 등의 시효

- 이익분배금 또는 상환금 등을 수익자가 그 지급개시일(판매회사가 수익자에게 이익분배금 또는 상환금등을 지급하는 날을 말합니다.)로부터 5년간 지급을 청구하지 아니한 때에는 판매회사가 취득할 수 있습니다.
- 신탁업자가 이익분배금 또는 상환금등을 판매회사에게 인도한 후에는 판매회사가 수익자에 대하여 그 지급에 대한 책임을 부담합니다.

2) 과세

- 다음은 이 투자신탁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과세 및 이 투자신탁의 수익자가 부담하게 될 과세에 대한 내용으로서 이 펀드신고서 또는 투자설명서 작성 시점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그러나 정부의 정책 등에 따라 아래의 과세관련 내용은 변경 가능합니다. 또한, 집합투자업자는 아래의 과세 방법이 정확하다는 것을 보장하지 아니하므로 보다 정확하고 자세한 이 투자신탁과 관련한 세제부분은 세무전문가와와의 상담이 필요합니다.
-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는 소득이 발생하는 투자신탁 단계에서의 과세와 수익자에게 이익을 분배하는 단계에서의 과세로 나누어집니다.

가. 투자신탁에 대한 과세 별도의 소득과세 부담이 없는 것이 원칙

- 투자신탁 단계에서는 소득에 대해서 별도의 세금 부담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투자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이자·배당소득은 귀속되는 시점에는 원천징수하지 아니하고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이 수익자에게 지급하는 날(특약에 따라 원본에 전입되는 날 및 신탁계약기간 연장하는 날 포함)에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으로 원천징수하고 있습니다. 다만, 외국원천징수세액은 다음과 같은 범위를 한도로 환급을 받고 있습니다.

※ 환급세액 = 외국납부세액 × 환급비율*

* 환급비율 = 과세대상소득금액 / 국외원천과세대상소득금액. 단, 환급비율 >1 이면 1, 환급비율 <0 이면 0으로 함

- 발생 소득에 대한 세금 외에 투자재산의 매입, 보유, 처분 등에서 발생하는 취득세, 등록세, 증권거래세 및 기타 세금에 대해서는 투자신탁의 비용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나. 수익자에 대한 과세 원천징수 원칙

- 수익자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을 지급받는 날(특약에 따라 원본에 전입되는 날 및 신탁계약기간 연장되는 날 포함)에 과세이익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의 형식으로 납부하게 되며,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계좌간 이체, 계좌의 명의변경, 실물양도의 방법으로 거래하는 경우에도 보유기간 동안 발생한 과세이익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의 형식으로 납부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과세이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하는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채권 및 외국집합투자증권 등 제외) 및 이를 대상으로 하는 선물, 벤처기업의 주식 등에서 발생하는 매매·평가 손익을 분배하는 경우 당해 매매·평가 손익은 과세대상인 배당소득금액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다. 수익자에 대한 과세율 개인, 일반법인 15.4%(지방소득세 포함)

- 거주자 개인이 받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과세이익에 대해서는 15.4% (소득세 14%, 지방소득세 1.4%)의 세율로 원천징수 됩니다. 이러한 소득은 개인의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자소득과 배당

배당소득)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원천징수로 납세의무 종결되나,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다른 종합소득(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과 합산하여 개인소득세율로 종합과세 됩니다.

- 내국법인이 받는 투자신탁의 과세이익은 15.4% (법인세 14%, 지방소득세 1.4%)의 세율로 원천징수(금융기관 등의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이러한 소득은 법인의 결산 시점에 투자신탁으로부터 받게 되는 소득과 법인의 다른 소득 전체를 합산한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며, 이전에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게 됩니다.

- ※ **기준가격:** 집합투자기구(펀드)의 투자원금에 운용성과를 반영한 금액으로서 운용성과에 따라 변경되며, 매입 혹은 환매시 적용됩니다.
- ※ **과표기준가격:** 펀드의 투자원금에 과세대상자산("나. 수익자에 대한 과세" 참조)에서 발생한 운용성과만을 더하거나 차감하여 계산된 것으로서, 환매 또는 이익분배시 납부해야 할 세금을 계산할 때 적용됩니다. 과표기준가격은 비과세대상자산("나. 수익자에 대한 과세" 참조)에서 발생한 손실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기준가격을 기준으로 한 투자손익이 (-)손실인 경우에도 수익자는 과세를 당할 수 있습니다.
- ※ **상기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내용 및 각 수익자에 대한 과세는 정부 정책, 수익자의 세무상의 지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수익자는 투자신탁에 대한 투자로 인한 세금 영향에 관하여 조세전문가와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3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등에 관한 사항

1. 재무정보

이 투자신탁의 재무제표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업회계기준 중 투자신탁에 관한 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으며, 동 재무제표에 대한 회계감사법인 및 감사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 간	회계감사법인	감사의견
제 14기(2014.10.04 - 2015.10.03)	회계감사면제	해당없음
제 13기(2013.10.04 - 2014.10.03)	회계감사면제	해당없음
제 12기(2012.10.04 - 2013.10.03)	회계감사면제	해당없음

1) 요약재무정보

(단위: 원)

대차대조표			
항 목	제 14기	제 13기	제 12기
	(2015.10.03)	(2014.10.03)	(2013.10.03)
운용자산	13,660,957,849	15,740,093,666	21,780,054,036
증권	12,469,061,590	15,358,409,436	21,302,780,102
파생상품	0	0	0
부동산/실물자산	0	0	0
현금 및 예치금	1,191,896,259	381,684,230	477,273,934
기타 운용자산	0	0	0
기타자산	524,068,508	1,065,922,646	692,949,847
자산총계	14,185,026,357	16,806,016,312	22,473,003,883
운용부채	0	0	0
기타부채	238,927,309	536,090,725	619,358,296
부채총계	238,927,309	536,090,725	619,358,296
원본	13,637,524,161	15,863,924,949	20,901,642,156
수익조정금	-70,258,615	-59,659,290	-173,622,210
이익잉여금	378,833,502	465,659,928	1,125,625,641
자본총계	13,946,099,048	16,269,925,587	21,853,645,587

손익계산서			
항 목	제 13기	제 13기	제 12기
	(2014.10.04 - 2015.10.03)	(2013.10.04 - 2014.10.03)	(2012.10.04 - 2013.10.03)
운용수익	379,912,067	466,739,768	1,127,201,165
이자수익	167,975,312	163,335,636	297,479,734
배당수익	172,731,079	195,606,048	258,446,925
매매/평가차익(손)	39,205,676	107,798,084	571,274,506
기타수익	194,960	402,813	201,843
운용비용	913,769	525,785	285,000
관련회사 보수	0	0	0
매매수수료	913,769	525,785	285,000
기타비용	359,756	956,868	1,492,367
당기순이익	378,833,502	465,659,928	1,125,625,641
매매회전율	162.43	368.40	272.70

주1) 요약재무정보 사항 중 매매회전율이란 주식매매의 빈번한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해당 운용기간동안 매도한 주식가액을 같은 기간동안 평균적으로 보유한 주식가액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1회계연도동안의 평균적인 주식투자규모가 100억원이고, 주식매도금액 또한 100억원인 경우 매매회전율은 100%(연기준)로 합니다.

주2) 상기의 요약 재무제표 및 정식 재무제표의 경우 작성 기준일은 동일하나, 상기의 요약 재무제표는 결산이 확정된 것이 아닌 결산시 이익분배금등을 감안하여 작성한 것이며, 정식 재무제표의 경우 결산 후 이익분배금을 포함한 모든 손익을 확정지어 회계 감사용으로 작성한 것이므로 계정항목이나, 합계상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주3) 회계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은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정식 재무제표(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를 기재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는 한국금융투자협회 인터넷 홈페이지(www.kofia.or.kr)에 공시된 감사보고서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4) 요약재무정보 중 제12기, 13기(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의 일부 내용이 잘못 계상되어 수정 되었습니다

2) 대차대조표

(단위: 원)

과목	제14기(2015.10.03)		제13기(2014.10.03)		제12기(2013.10.03)	
	금	액	금	액	금	액
자 산						
운 용 자 산						
현금및예치금		1,191,896,259		381,684,230		477,273,934
1. 현금및현금성자산	1,091,298,470		286,109,780		396,960,484	
2. 예치금	0		0		0	
3. 증거금	100,597,789		95,574,450		80,313,450	
대출채권		0		1,700,000,000		500,000,000
1. 골론	0		1,700,000,000		500,000,000	
2. 환매조건부채권매수	0		0		0	
3. 매입어음	0		0		0	
4. 대출금	0		0		0	
유가증권		12,469,061,590		13,658,409,436		20,802,780,102
1. 지분증권	8,678,819,660		8,821,765,110		15,312,602,570	
2. 채무증권	2,973,799,530		3,394,579,281		5,012,959,532	
3. 수익증권	816,442,400		1,442,065,045		477,218,000	
4. 기타유가증권	0		0		0	
파생상품		0		0		0
1. 파생상품	0		0		0	
부동산과 실물자산		0		0		0
1. 건물	0		0		0	
2. 토지	0		0		0	
3. 농산물	0		0		0	
4. 축산물	0		0		0	
기타운용자산		0		0		0
1. 임차권	0		0		0	
2. 전세권	0		0		0	
기 타 자 산		524,068,508		1,065,922,646		692,949,847
1. 매도유가증권미수금	150,000		584,808,185		638,069,385	
2. 정산미수금	0		0		0	
3. 미수이자	523,863,908		481,073,211		54,880,462	
4. 미수배당금	54,600		0		0	
5. 기타미수입금	0		41,250		0	
6. 기타자산	0		0		0	
7. 수익증권청약금	0		0		0	
자 산 총 계		14,185,026,357		16,806,016,312		22,473,003,883
부 채						
운 용 부 채		0		0		0
1. 파생상품	0		0		0	
2. 환매조건부채권매도	0		0		0	
3. 기타운용부채	0		0		0	
기 타 부 채		238,927,309		536,090,725		619,358,296
1. 매수유가증권미지급금	6,528,880		508,184,643		504,983,657	
2. 정산미지급금	0		0		0	
3. 해지미지급금	232,382,699		27,683,634		114,094,868	
4. 수수료미지급금	15,730		222,448		279,771	
5. 미지급이익분배금	0		0		0	
6. 기타미지급금	0		0		0	
부 채 총 계		238,927,309		536,090,725		619,358,296
자 본						
1. 원 본	13,637,524,161		15,863,924,949		20,901,642,156	
2. 집합투자기구안정조정금	-70,258,615		-59,659,290		-173,622,210	
3. 이월잉여금	378,833,502		465,659,928		1,125,625,641	
(발행좌수 당기: 13,637,524,161 좌 전기: 15,863,924,949 좌 전전기: 20,901,642,156 좌) (기준가격 당기: 1,022.63 원 전기: 1,025.59 원 전전기: 1,045.55 원)	이익잉여금 수익조정금	378,833,502		465,659,928		1,125,625,641
자 본 총 계		13,946,099,048		16,269,925,587		21,853,645,587
부 채 와 자 본 총 계		14,185,026,357		16,806,016,312		22,473,003,883

3) 손익계산서

(단위: 원)

과 목	제14기(2014.10.04 ~ 2015.10.03)		제13기(2013.10.04 ~ 2014.10.03)		제12기(2012.10.04 ~ 2013.10.03)	
	금 액		금 액		금 액	
운 용 수 익						
1. 투자수익		340,901,351		359,344,497		556,128,502
1. 이 자 수 익	167,975,312		163,335,636		297,479,734	
2. 배당금수익	172,731,079		195,606,048		258,446,925	
3. 수수료수익	0		338,250		0	
4. 기타투자수익	194,960		64,563		201,843	
2. 매매차익과 평가차익		1,689,348,871		2,280,950,608		2,784,614,018
1. 자본증권매매/평가차익	1,605,996,600		2,151,444,881		2,708,074,723	
2. 채무증권매매/평가차익	33,763,167		38,925,729		22,196,746	
3. 수익증권매매/평가차익	15,509,104		33,646,491		12,485,328	
4. 현금및대체증권매매/평가차익	0		3,507		17,221	
5. 파생상품매매/평가차익	34,080,000		56,930,000		41,840,000	
6. 외환거래/평가차익	0		0		0	
7. 기타차익	0		0		0	
3. 매매차손과 평가차손		1,650,143,195		2,173,152,524		2,213,339,512
1. 자본증권매매/평가차손	1,545,937,576		2,101,844,811		2,098,204,053	
2. 채무증권매매/평가차손	62,332,402		23,430,936		66,805,277	
3. 수익증권매매/평가차손	12,503,217		6,146,777		8,400,902	
4. 현금및대체증권매매/평가차손	0		0		309,280	
5. 파생상품매매/평가차손	29,370,000		41,730,000		39,620,000	
6. 외환거래/평가차손	0		0		0	
7. 기타차손	0		0		0	
운 용 비 용		555,629		1,482,653		1,777,367
1. 운용수수료	0		0		0	
2. 판매수수료	0		0		0	
3. 수탁수수료	0		0		0	
4. 지급수수료	0		0		0	
5. 기타비용	555,629		1,482,653		1,777,367	
당기순이익(또는 당기순손실)		379,551,398		465,659,928		1,125,625,641
좌당순이익(또는 좌당순손실)		0.027831401		0.029353387		0.053853455

2. 연도별 설정 및 환매현황

가. 키움 프런티어 배당주 증권 투자신탁 제1호[주식혼합]

(단위: 억좌, 억원)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설정(발행)		환매			
	좌수	금액	좌수	금액	좌수	금액	좌수	금액
	(출자 지분수)		(출자 지분수)		(출자 지분수)		(출자 지분수)	
2014.10.04 – 2015.10.03	159	159	21	21	43	44	136	136
2013.10.04 – 2014.10.03	209	209	32	32	82	83	159	159
2012.10.04 – 2013.10.03	268	268	65	66	125	127	209	209

나. 키움 프런티어 배당주 증권 투자신탁 제1호[주식혼합] C1

(단위: 억좌, 억원)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설정(발행)		환매			
	좌수	금액	좌수	금액	좌수	금액	좌수	금액
	(출자 지분수)		(출자 지분수)		(출자 지분수)		(출자 지분수)	
2014.10.04 – 2015.10.03	147	147	12	12	32	32	128	128
2013.10.04 – 2014.10.03	195	196	23	23	71	71	147	147
2012.10.04 – 2013.10.03	257	257	34	34	96	97	195	195

다. 키움 프런티어 배당주 증권 투자신탁 제1호[주식혼합] C-W

(단위: 억좌, 억원)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설정(발행)		환매			
	좌수	금액	좌수	금액	좌수	금액	좌수	금액
	(출자 지분수)		(출자 지분수)		(출자 지분수)		(출자 지분수)	
2012.10.04 – 2013.04.03	1	1	0	0	1	1	0	0
2011.10.04 – 2012.10.03	1	1	0	0	0	0	1	1

라. 키움 프런티어 배당주 증권 투자신탁 제1호[주식혼합] C-e

(단위: 억좌, 억원)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설정(발행)		환매			
	좌수	금액	좌수	금액	좌수	금액	좌수	금액
	(출자 지분수)		(출자 지분수)		(출자 지분수)		(출자 지분수)	
2014.10.04 – 2015.10.03	4	4	1	1	1	1	4	4
2013.10.04 – 2014.10.03	6	6	1	1	3	3	4	4
2012.10.04 – 2013.10.03	5	5	2	2	2	2	6	6

마. 키움 프런티어 배당주 증권 투자신탁 제1호[주식혼합] A1

(단위: 억좌, 억원)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설정(발행)		환매			
	좌수	금액	좌수	금액	좌수	금액	좌수	금액
	(출자 지분수)		(출자 지분수)		(출자 지분수)		(출자 지분수)	
2014.10.04 – 2015.10.03	9	9	4	4	6	7	6	6
2013.10.04 – 2014.10.03	10	10	5	5	6	6	9	9
2012.10.04 – 2013.10.03	12	12	5	5	6	6	10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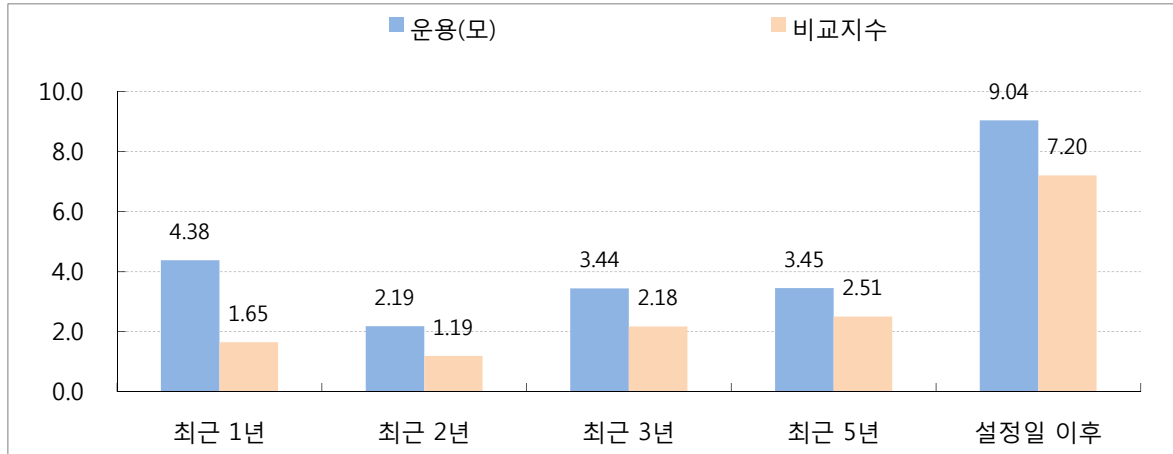
주1) 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분을 포함하였습니다. 기간말 잔고 금액은 결산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3.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세전 기준)

다음의 투자실적은 이 투자신탁의 과거성과를 나타낼 뿐 미래의 운용성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투자실적 추이는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도움을 드리하고자 작성된 것으로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기간 동안의 평균수익률을, 연도별 수익률은 기간별 수익률 변동성을 나타낸 것입니다. 연평균 수익률 및 연도별 수익률에 관한 정보는 신고서 또는 투자설명서의 작성기준일로 산정한 수익률로서 실제 투자시점의 수익률은 크게 다를 수 있으므로 별도로 확인하여야 합니다. 이 투자신탁의 투자성과와 관련된 상세한 내용은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사이트에 게시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연평균수익률(세전기준)

(단위: %)



종류	설정일	최근 1년	최근 2년	최근 3년	최근 5년	설정일 이후
		20141101-20151103	20131102-20151103	20121103-20151103	20101103-20151103	설정일 이후-2011103
운용(모)	2001.10.04	4.38	2.19	3.44	3.45	9.04
비교지수	-	1.65	1.19	2.18	2.51	7.20
C1	2001.10.04	2.95	0.79	2.02	2.00	7.91
비교지수	-	1.65	1.19	2.18	2.51	7.20
C-e	2006.10.20	3.11	0.90	2.13	2.14	4.77
비교지수	-	1.65	1.19	2.18	2.51	4.63
A1	2007.09.20	3.29	1.12	2.36	2.36	3.01
비교지수	-	1.65	1.19	2.18	2.51	3.08

키움 프런티어 배당주 증권 투자신탁 제1호[주식혼합]

주1) 비교지수 : [KOSPI지수 X 40%]+ [KBP 통안증권지수 X 50%] + [Call X 10%]

주2) 비교지수의 수익률에는 운용보수 등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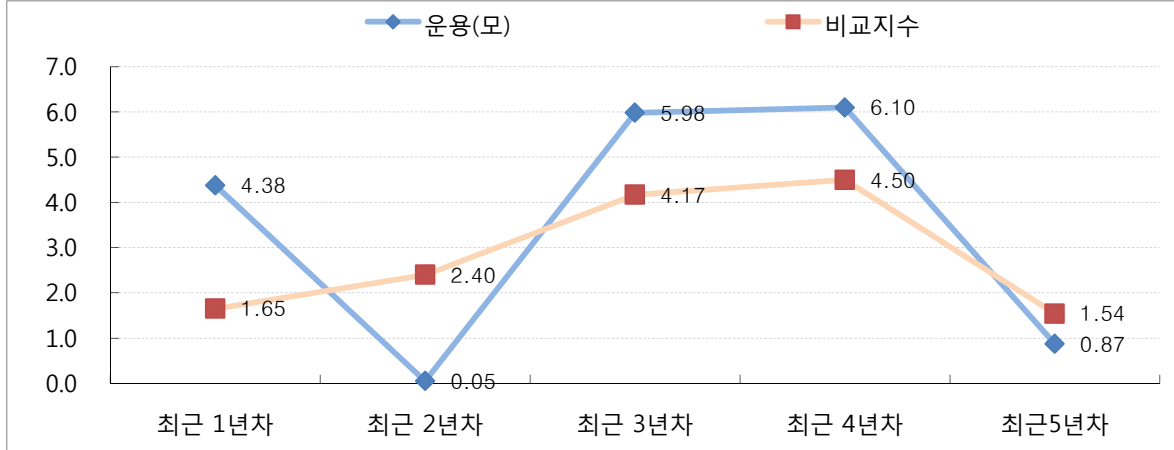
주3)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 기간동안의 누적수익률을 기하평균방식으로 계산한 것으로 해당기간 동안의 평균 수익률을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주4) 종류형 투자신탁의 경우 연평균수익률 그래프는 모든 종류 수익증권을 통합하여 운용하는 투자신탁(전체)를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이 경우 투자신탁(전체)의 수익률에는 운용보수 등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등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주5) 본 수익률은 과세전 기준이며, 작성기준일로 산정한 수익률로 실제 투자시점의 수익률은 크게 다를 수 있으므로 별도로 확인하여야 합니다.

2) 연도별수익률(세전기준)

(단위: %)



종류	설정일	최근 1년차	최근 2년차	최근 3년차	최근 4년차	최근 5년차
		20141101-20151103	20131102-20141101	20121103-20131102	20111103-20121103	20101103-20111103
운용(모)	2001.10.04	4.38	0.05	5.98	6.10	0.87
비교지수	-	1.65	2.40	4.17	4.50	1.54
C1	2001.10.04	2.95	-1.33	4.51	4.61	-0.59
비교지수	-	1.65	2.40	4.17	4.50	1.54
C-e	2006.10.20	3.11	-1.27	4.63	4.78	-0.43
비교지수	-	1.65	2.40	4.17	4.50	1.54
A1	2007.09.20	3.29	-1.00	4.87	4.99	-0.18
비교지수	-	1.65	2.40	4.17	4.50	1.54

주1) 비교지수: [KOSPI지수 X 40%]+ [KBP 통안증권지수 X 50%] + [Call 지수 X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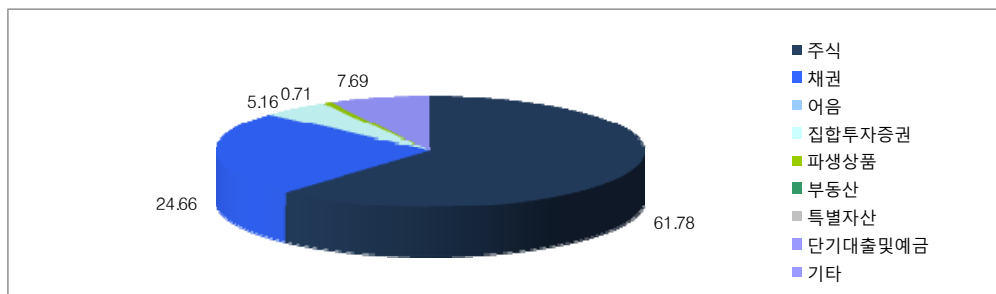
주2) 비교지수의 수익률에는 운용보수 등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주3) 연도별 수익률은 해당되는 각 1년간의 단순 누적수익률로 투자기간동안 이 투자신탁 수익률의 변동성을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주4) 종류형 투자신탁의 경우 연도별수익률 그래프는 모든 종류 수익증권을 통합하여 운용하는 투자신탁(전체)를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이 경우 투자신탁(전체)의 수익률에는 운용보수 등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등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주5) 본 수익률은 과세전 기준이며, 작성기준일로 산정한 수익률로 실제 투자시점의 수익률은 크게 다를 수 있으므로 별도로 확인하여야 합니다.

3) 투자신탁의 자산 구성 현황



[2015.10.03 현재 / 단위 : 억원, %]

통화별 구분	증권				파생상품		부동산	특별자산		단기대출 및 예금	기타	자산총액
	주식	채권	여음	집합투자증권	장내	장외		실물자산	기타			
KRW	87.6 (61.78)	35.0 (24.66)	0.0 (0.00)	7.3 (5.16)	1.0 (0.71)	0.0 (0.00)	0.0 (0.00)	0.0 (0.00)	0.0 (0.00)	10.9 (7.69)	0.0 (0.00)	141.9 (100.00)
합계	87.6 (61.78)	35.0 (24.66)	0.0 (0.00)	7.3 (5.16)	1.0 (0.71)	0.0 (0.00)	0.0 (0.00)	0.0 (0.00)	0.0 (0.00)	10.9 (7.69)	0.0 (0.00)	141.9 (100.00)

주1) () 내는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 대비 비중을 나타냅니다.

주2) 어음 : 양도성예금증서(CD) 및 어음을 말합니다.

주3) 장내파생상품은 파생상품의 거래에 따른 위탁증거금의 합계액을 말하며, 장내파생상품 평가액은 국내/외 파생상품별 구성현황에 기재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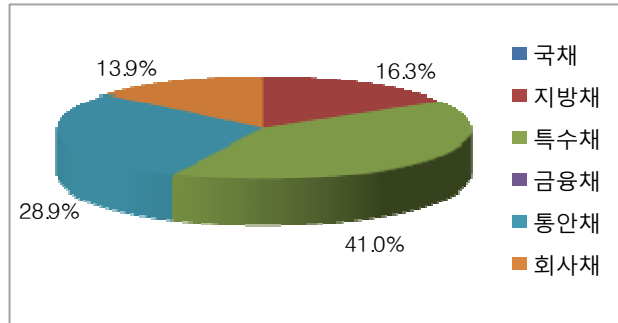
주4) 장외파생상품은 파생상품의 거래에 따른 손익을 말하며, 장외파생상품 평가액(명목계약금액이 있는 경우 명목계약금액을 포함함)은 국내/외 파생상품별 구성현황에 기재합니다.

4) 투자신탁의 주된 투자대상자산 구성 현황

① 국내 채권종류별 구성 현황

[2015.10.03 현재 / 단위 : 억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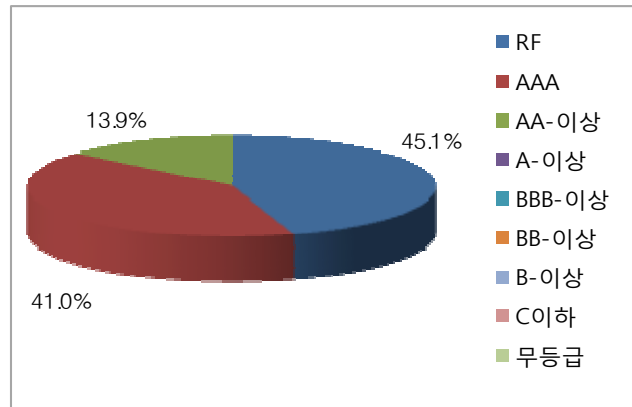
구분	금액	비중
국채	0.0	0.0%
지방채	5.7	16.3%
특수채	14.3	41.0%
금융채	0.0	0.0%
통안채	10.1	28.9%
회사채	4.8	13.9%
합계	34.9	100.0%



② 국내 채권신용평가등급별 구성 현황

[2015.10.03 현재 / 단위 : 억원, %]

구분	금액	비중
RF	15.8	45.1%
AAA	14.3	41.0%
AA-이상	4.8	13.9%
A-이상	0.0	0.0%
BBB-이상	0.0	0.0%
BB-이상	0.0	0.0%
B-이상	0.0	0.0%
C이하	0.0	0.0%
무등급	0.0	0.0%
합계	34.9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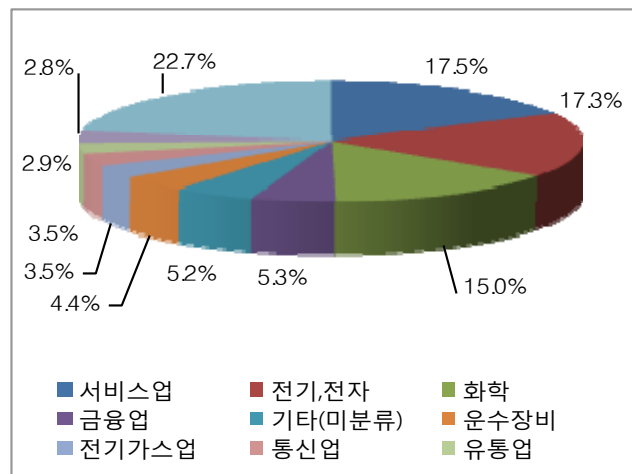
③ 해외채권 및 해외주식 국가별 구성 현황

해당사항 없습니다.

④ 국내 주식 업종 별 구성 현황

[2015.10.03 현재 / 단위 : 억원, %]

업종명	금액	비중
서비스업	15.4	17.5%
전기,전자	15.1	17.3%
화학	13.1	15.0%
금융업	4.7	5.3%
기타(미분류)	4.6	5.2%
운수장비	3.8	4.4%
전기가스업	3.1	3.5%
통신업	3.0	3.5%
유통업	2.5	2.9%
음식료품	2.4	2.8%
기타	19.9	22.7%
합계	87.6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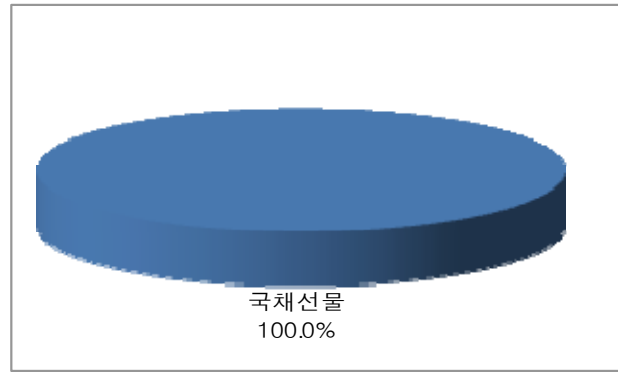
⑤ 해외채권 및 해외주식 통화별 구성 현황

해당사항 없습니다.

⑥ 국내 파생상품별 구성현황

[2015.10.03 현재 / 단위 : 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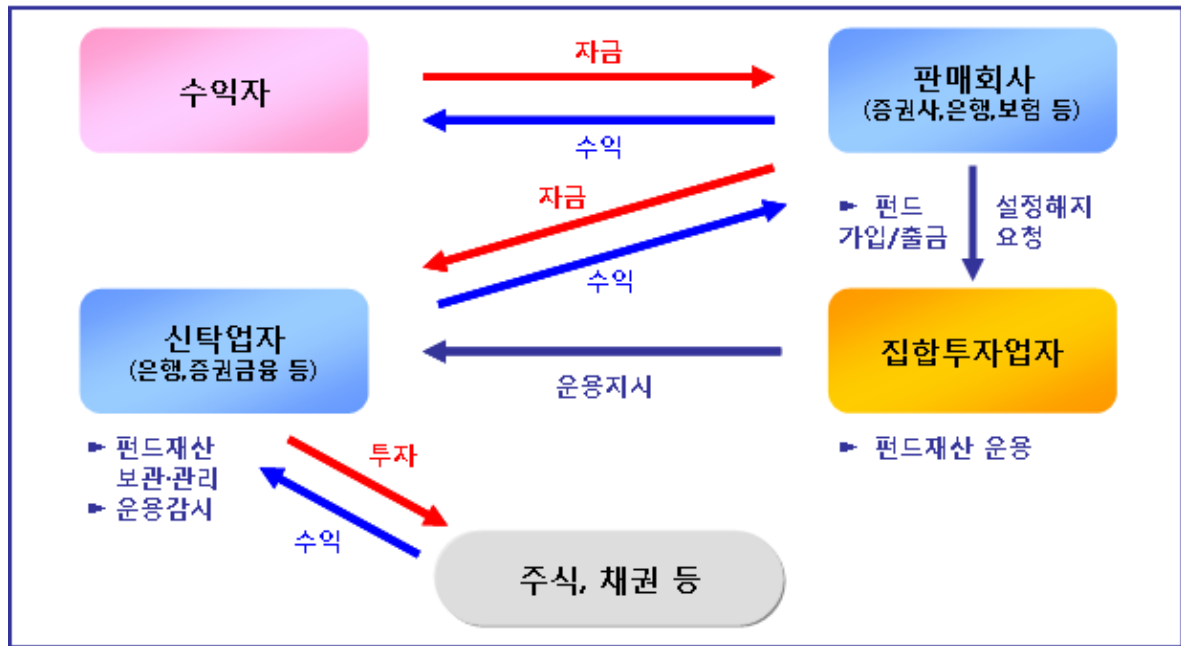
선물구분	평가액	보유비율
국채선물	5.5	100.0%
합계	5.5	100.0%



⑦ 해외 파생상품별 구성현황

해당사항 없습니다.

제4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1) 회사개요

회사명	키움투자자산운용 주식회사
주소 및 연락처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4길 18 키움파이낸스스퀘어 (연락처: 02) 789-0300 / www.kiwoomam.com)
회사연혁	1988.03 럭키투자자문주식회사 설립 1990.09 미국 SEC 투자자문업 등록 1995.02 LG투자자문주식회사로 상호변경 1996.07 LG투자신탁운용주식회사로 상호변경 및 업종 전환 1997.04 투자자문 일임업 허가 2004.12 우리금융그룹 계열사로 편입 2005.06 우리자산운용 출범 LG투자신탁운용, 우리투자신탁운용 양사 합병. 자본금 491억 2005.09 자본금 감자(총 491억 ⇒ 333억) 2006.06 우리크레디트스위스자산운용 출범 Credit Suisse사와 합작 2009.05 우리자산운용 사명변경 2014.12 키움투자자산운용 주식회사 출범 (우리자산운용과 키움자산운용의 합병)
자본금	410억원
주요주주현황	키움증권

2) 주요 업무 등

가. 주요 업무

- 투자신탁의 설정·해지
-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운용지시
- 기타 법령 및 집합투자계약에서 규정한 사항

나. 의무 및 책임

- 집합투자업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투자신탁재산을 관리하여야 하며, 수익자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합니다.
- 집합투자업자가 법령, 집합투자계약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집합투자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관련되는 이사 또는 감사(감사위원회의 위원을 포함)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집합투자업자는 이들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판매회사·일반사무관리회사·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 및 채권평가회사는 이 법에 의하여 수익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다. 업무의 위탁

집합투자업자는 기준가격계산업무를 일반사무관리회사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일반사무관리회사는 이 투자신탁의 기준가격을 매일 산정하여 집합투자업자에 통보하여야 하며, 집합투자업자는 산정된 기준가격을 집합투자업자·판매회사의 영업소 및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일반사무관리회사는 기준가격계산업무 등과 관련한 용역제공의 대가로 보수를 받게 되며, 그 보수는 투자신탁재산이 부담하게 됩니다. 본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는 기준가격계산업무를 우리펀드서비스(주)에 위탁하였습니다. 업무의 위탁에 대한 책임은 업무를 위탁한 집합투자업자에 있습니다.

3) 최근 2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

(단위: 십억원)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구분	2014.12.31	2013.12.31	구분	2014.01.01 ~2014.12.31	2013.04.01 ~ 2013.12.31
현금및예치금	360	697	영업수익	318	245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250	-	영업비용	219	199
매도가능금융자산	139	17	영업이익	99	46
대출채권	139	13	영업외수익	1	1
유형자산	6	3	영업외비용	1	5
무형자산	30	21	법인세비용차감전 순이익	99	42
기타자산	57	66	법인세비용	5	7
이연법인세자산	42	35	당기순이익	94	35
자산총계	1,023	852	기타포괄손익	(0.4)	(0.4)
예수부채	3	2	총포괄손익	94	35
기타부채	125	163			
당기법인세부채	9	6			
부채총계	137	172			
자본금	410	333			
자본잉여금	173	137			
기타포괄손익누계액	(1)	(0.4)			
이익잉여금	305	210			
자본총계	886	680			
부채및자본총계	1,023	852			

4) 운용자산규모

[2015.11.30 현재 / 단위 : 억원]

구분	증권집합투자기구					부동산 및 부동산 파생	특별자산 및 특별자산 파생	혼합자산 및 혼합자산 파생	단기금융	총 계
	주식형	채권형	혼합형	재간접형	파생형					
수탁고	10,852	50,471	5,031	2,034	9,950	9,917	21,224	259	67,627	177,365

2. 운용관련업무 수탁업자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습니다.

3. 집합투자재산 관리회사에 관한 사항(신탁업자)

1) 회사의 개요

회사명	농협은행
주소 및 연락처	서울 중구 통일로 120 (연락처: (02) 2080-5114)
홈페이지	www.nonghyup.com

2) 주요 업무 등

가. 주요 업무

- 집합투자재산의 보관 및 관리
- 집합투자업자의 집합투자재산 운용지시에 따른 자산의 취득 및 처분의 이행
- 집합투자업자의 집합투자재산 운용지시에 따른 집합투자증권의 매매대금 및 이익금의 지급
- 집합투자업자의 집합투자재산 운용지시 등에 대한 감시
- 집합투자재산에서 발생하는 이자·배당·수익금·임대료 등의 수령
- 무상으로 발행되는 신주의 수령
- 투자증권의 상환금의 수입
- 여유자금 운용이자의 수입
- 금융위원회가 인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나. 의무 및 책임

- 투자신탁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투자신탁재산을 보관·관리하여야 하며, 수익자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합니다.
- 신탁업자는 그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하는 집합투자업자의 운용지시 또는 운용행위가 법령, 집합투자계약 또는 투자설명서(예비투자설명서 및 간이투자설명서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등을 위반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라 확인하고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그 운용지시 또는 운용행위의 철회·변경 또는 시정을 요구하여야 합니다.
- 신탁업자는 해당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하는 집합투자업자가 위의 요구를 제3영업일 이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법 시행령 제269조제2항에 따라 공시하여야 합니다.
-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재산과 관련하여 다음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 ㉠ 투자설명서가 법령 및 집합투자계약에 부합하는지 여부
 - ㉡ 법 제88조제1항·제2항에 따른 자산운용보고서의 작성이 적정한지 여부
 - ㉢ 법 제93조제2항에 따른 위험관리방법의 작성이 적정한지 여부
 - ㉣ 법 제238조제1항에 따른 집합투자재산의 평가가 공정한지 여부
 - ㉤ 법 제238조제6항에 따른 기준가격 산정이 적정한지 여부
 - ㉥ 시정요구 등에 대한 집합투자업자의 이행명세
 - ㉦ 그 밖에 수익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신탁업자가 법령·집합투자계약·투자설명서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4. 일반사무관리회사에 관한 사항

1) 회사의 개요

회사명	우리펀드서비스
주소 및 연락처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 북로60길 17 (연락처: (02) 3151-3500)
홈페이지	www.woorifs.co.kr

2) 주요 업무

가. 주요 업무

- 집합투자업자로부터 전달된 운용내역에 의한 집합투자재산을 평가
- 이 투자신탁의 기준가격을 매일 계산(기준가격 산정업무)
- 집합투자업자에 통보(기준가격의 통보업무)
- 기타 집합투자재산의 회계처리와 관련된 자료제공 및 기타업무를 수행

나. 의무 및 책임

- 일반사무관리회사는 이 투자신탁의 기준가격을 매일 산정하여 집합투자업자에 통보하여야 하며, 집합투자업자는 산정된 기준가격을 매일 공고·게시하여야 합니다.
- 일반사무관리회사의 의무는 법과 시행령 그리고 그 하위규정에 상세히 기재되어 있으며 "수탁받은 주요 업무내용"에 요약되어 있습니다. 일반사무관리회사는 법령, 집합투자계약 또는 이 투자신탁의 투자설명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5.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습니다.

6. 채권평가회사에 관한 사항

1) 회사의 개요

회사명	주소 및 연락처, 홈페이지
한국자산평가	- 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을곡로 88 - 연락처: (02) 399-3350 - 홈페이지: www.koreaap.com
NICE 피앤아이	- 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70길 19 - 연락처: (02) 398-3900 - 홈페이지: www.nicepni.com
KIS채권평가	- 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6길 3 - 연락처: (02) 3215-1400 - 홈페이지: www.bond.co.kr
에프엔자산평가	- 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사동5길 29 - 연락처: (02) 721-5300 - 인터넷홈페이지주소: http://www.fnpricing.com

2) 주요 업무

가. 주요 업무

-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채권 등 투자증권, 파생상품 등 자산의 가격을 평가하고 이를 투자신탁에 제공

나. 의무 및 책임

- 채권평가회사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업무준칙을 제정하고 그에 따라 채권 등 자산을 평가하여야 합니다.
 - ① 보편타당하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채권 등 자산의 가격평가업무를 일관성이 유지되도록 하기 위한 사항
 - ② 미공개정보의 이용을 금지하기 위한 사항
 - ③ 채권 등 자산의 가격평가업무를 위하여 얻은 정보를 다른 업무를 하는 데에 이용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한 사항

제5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1. 수익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1) 수익자 총회 등

가. 수익자총회의 구성

- 이 투자신탁에는 전체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를 두며, 수익자총회는 법령 또는 집합투자계약의 수익자총회 개최사유 중 이 투자신탁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만 결의할 수 있습니다.
- 종류형투자신탁인 경우에는 수익자총회의 의결을 요하는 경우로서 특정 종류의 수익증권 수익자에 대하여만 이해관계가 있는 때에는 그 종류의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나. 수익자총회의 소집 및 의결권 행사방법

① 수익자총회의 소집

- 수익자총회는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가 소집합니다. 이 경우 수익자총회는 집합투자업자의 본점소재지 또는 이에 인접한 지역에 소집하여야 합니다.
-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 또는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한 수익자가 수익자총회의 목적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여 수익자총회의 소집을 집합투자업자에 요청하는 경우 1개월 이내에 수익자총회를 소집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수익자총회를 소집하기 위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신탁업자 또는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한 수익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수익자총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총회의 소집통지를 한국예탁결제원에 위탁하여야 하며, 한국예탁결제원은 수익자총회의 소집을 통지하거나 수익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의결권 행사를 위한 서면을 보내야 합니다.
- 집합투자업자가 수익자총회를 소집할 경우에는 수익자총회일을 정하여 2주간 전에 각 수익자에 대하여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한 통지서를 서면 또는 컴퓨터통신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② 의결권 행사방법

- 수익자총회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합니다. 다만, 법령에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 외에 집합투자계약으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에 대하여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5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할 수 있습니다.
- 수익자는 법 제190조제6항 및 법 시행령 제221조에 의하여 수익자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한 수익자가 소유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결의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의결권을 행사(이하 “간주의결권행사”라 한다)한 것으로 봅니다.
 - 수익자에게 법시행령 제221조제6항의 방법에 따라 의결권 행사에 관한 통지가 있었으나 의결권이 행사되지 아니하였을 것
 - 간주의결권행사의 방법이 집합투자계약에 기재되어 있을 것
 - 수익자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한 수익증권의 총좌수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10분의 1 이상일 것
 - 그 밖에 수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법시행령 제221조제7항에서 정하는 방법 및 절차를 따를 것
- 서면에 의하여 행사한 의결권의 수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하여 행사한 의결권의 수에 합산합니다.
-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로부터 제출된 의결권 행사를 위한 서면과 의결권 행사에 참고할 수 있는 자료를 수익자총회일부터 6개월간 본점에 비치하여야 하며, 수익자는 집합투자업자의 영업시간 중에 언제든지 서면 및 자료의 열람과 복사를 청구 할 수 있습니다.

③ 연기수익자총회

-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총회의 결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그 날부터 2주 이내에 연기된 수익자총회(이하 “연기수익자총회”라 합니다)를 소집하여야 합니다.
- 연기수익자총회의 결의에 관하여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8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합니다. 다만, 법에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 외에 신탁계약으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에 대하여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10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할 수 있습니다.

다. 수익자총회 결의사항

-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을 포함한 관련 법령 및 집합투자계약에서 정한 사항은 수익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합니다.
 -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 등이 받는 투자신탁보수 또는 그 밖의 수수료의 인상
 - 신탁업자의 변경(합병·분할·분할합병, 그 밖에 법시행령 제216조에서 정하는 사유로 변경되는 경우는 제외)
 - 투자신탁계약기간의 변경(투자신탁을 설정할 당시에 그 기간변경이 신탁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 투자신탁의 종류의 변경
 - 주된 투자대상자산의 변경
 - 집합투자업자의 변경(합병·분할·분할합병, 금융위원회의 조치 또는 명령에 따라 변경되는 경우는 제외)
 -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다른 투자신탁을 흡수하는 방법으로 합병하고자 하는 경우(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적은 소규모 투자신탁의 합병 등 법시행령 제225조의2제1항에서 정하는 경우는 제외)
 - 환매금지형투자신탁이 아닌 투자신탁의 환매금지형투자신탁으로의 변경
 - 환매대금 지급일의 연장
 - 그 밖에 수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라. 반대수익자의 수익증권매수청구권

- 투자신탁의 수익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에게 수익증권의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법 제18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신탁계약의 변경 또는 법 제193조제2항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에 대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에 반대(수익자총회 전에 해당 집합투자업자에게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로 한정합니다.)하는 수익자가 그 수익자총회의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하는 경우
 - 법 제19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에 반대하는 수익자가 법 시행령 제222조제1항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하는 경우
- 집합투자업자는 반대수익자의 수익증권 매수청구가 있는 경우 해당 수익자에게 수익증권의 매수에 따른 수수료, 그 밖의 비용을 부담시켜서는 아니 됩니다.
- 집합투자업자는 매수청구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투자신탁재산으로 매수청구기간의 종료일에 환매청구한 것으로 보아 집합투자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수익증권을 매수하여야 합니다. 다만, 매수자금이 부족하여 매수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수익증권의 매수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 집합투자업자는 반대수익자의 수익증권을 매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수익증권을 소각하여야 합니다.

2) 잔여재산 분배

-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집합투자계약에서 정한 신탁계약기간의 종료, 수익자총회의 투자신탁 해지 결의 등의 사유로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 투자신탁재산인 자산으로 수익자에게 상환금 등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3) 장부·서류의 열람 및 등·초본 교부청구권

- 수익자는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에게 영업시간 중에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그 수익자에 관련된 투자신탁재산에 관한 장부·서류의 열람이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는 법 시행령 제95조제1항에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수익자가 열람이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는 장부·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투자신탁재산명세서
- 수익증권 기준가격대장
- 재무제표 및 그 부속명세서
- 투자신탁재산 운용내역서

4) 손해배상책임

- 금융투자업자가 관련 법령·집합투자규약·투자설명서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배상의 책임을 질 금융투자업자가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을 증명하거나 수익자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할 때에 그 사실을 안 경우에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금융투자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로서 관련되는 임원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금융투자업자와 관련되는 임원이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증권신고서(정정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포함)와 투자설명서(예비투자설명서 및 간이 투자설명서를 포함)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함으로써 증권의 취득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다음 아래의 자는 그 손해에 관하여 배상의 책임을 집니다. 다만 배상의 책임을 질 자가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알 수 없었음을 증명하거나 그 증권의 취득자가 취득의 청약을 할 때에 그 사실을 안 경우에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그 증권신고서의 신고인과 신고 당시의 발행인의 이사(이사가 없는 경우 이에 준하는 자를 말하며, 법인의 설립 전에 신고된 경우에는 그 발기인을 말합니다)
 - 상법 제40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그 증권신고서의 작성을 지시하거나 집행한 자
 - 그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또는 그 첨부서류가 진실 또는 정확하다고 증명하여 서명한 공인회계사·감정인 또는 신용평가를 전문으로 하는 자 등(그 소속단체를 포함) 법 시행령 제135조제1항에서 정하는 자
 - 그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또는 첨부서류에 자기의 평가·분석·확인 의견이 기재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고 그 기재내용을 확인한 자
 - 그 증권의 인수인 또는 주선인(인수인 또는 주선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발행인 또는 매출인으로부터 직접 증권의 인수를 의뢰받아 인수조건 등을 정하는 인수인)
 - 그 투자설명서를 작성하거나 교부한 자
 - 매출의 방법에 의한 경우 매출신고 당시의 매출인

5) 재판관할

수익자가 소송을 제기하는 때에는 수익자의 선택에 따라 수익자의 주소지 또는 수익자가 거래하는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또는 판매회사의 영업점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익자가 외국환거래법에 제3조제1항제15호에 의한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수익자가 거래하는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또는 판매회사의 영업점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6) 기타 수익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

- 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규약 등 추가정보를 원하시는 고객은 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에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이 투자신탁의 기준가격 변동 등 운용실적에 관해서는 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이 투자신탁의 투자설명서(간이투자설명서 포함) 및 기준가격 변동 등은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열람·복사하거나, 키움투자자산운용의 인터넷홈페이지(www.kiwoomam.com) 또는 한국금융투자협회 인터넷홈페이지(www.kofi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

1) 의무해지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의 경우에는 지체 없이 투자신탁을 해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 신탁계약에서 정한 신탁계약기간의 종료
- 수익자총회의 투자신탁 해지결의
- 투자신탁의 피흡수 합병
- 투자신탁의 등록 취소
- 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 다만,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법 시행령 제224조의2에서 정하는 경우는 제외

2) 임의해지

-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다음의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투자신탁을 해지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 수익자 전원이 동의한 경우
 - 해당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전부에 대한 환매의 청구를 받아 신탁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 투자신탁을 설정한 후 1년이 되는 날에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 투자신탁이 설정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 소규모 펀드로 이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해지사유, 해지일자, 상환금등의 지급방법 및 기타 해지관련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거나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수익자에게 개별통지하여야 합니다.

3.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1) 정기보고서

가. 영업보고서 및 결산서류 제출 등

① 영업보고서

-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에 관한 매 분기의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매 분기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금융위원회 및 한국금융투자협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에 관한 영업보고서를 다음의 서류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 투자신탁의 설정 현황
 - 투자신탁재산의 운용 현황과 수익증권의 기준가격표
 - 법 제87조제8항제1호·제2호에 따른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내용 및 그 사유를 적은 서류
 -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자산 중 주식의 매매회전율과 자산의 위탁매매에 따른 투자중개업자별 거래금액·수수료와 그 비중

② 결산서류

-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의 결산기마다 다음의 서류 및 부속명세서(이하 “결산서류”라 합니다)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 대차대조표
 - 손익계산서
 - 자산운용보고서
-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에 대하여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산서류를 작성하여 금융위원회 및 한국금융투자협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투자신탁의 회계기간 종료
 - 투자신탁의 계약기간의 종료
 - 투자신탁의 해지

나. 자산운용보고서

- 집합투자업자는 자산운용보고서를 작성하여 해당 투자신탁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3개월마다 1회 이상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 다만, 수익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수익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다음의 경우에는 자산운용보고서를 수익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수익자가 자산운용보고서의 수령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 전화·전신·팩스, 전자우편 또는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의 방법으로 표시한 경우

- 집합투자업자가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를 설정하여 운용하는 경우로서 매월 1회 이상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 및 한국금융투자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자산운용보고서를 공시하는 경우
- 집합투자업자가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를 설정하여 운용하는 경우(법 제230조제3항에 따라 그 수익증권이 상장된 경우만 해당)로서 3개월마다 1회 이상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 및 한국금융투자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자산운용보고서를 공시하는 경우
- 수익자가 소유하고 있는 수익증권의 평가금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로서 집합투자계약에 자산운용보고서를 교부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는 경우
- 집합투자업자는 자산운용보고서에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 기준일(회계기간의 개시일부터 3개월이 종료되는 날, 회계기간의 말일, 계약기간의 종료일, 해지일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 현재의 투자신탁의 자산·부채 및 수익증권의 기준가격
 - 직전의 기준일(직전의 기준일 없는 경우에는 해당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부터 해당 기준일까지의 기간(이하 “해당 운용기간”이라 합니다) 중 운용경과의 개요 및 해당 운용기간 중의 손익사항
 - 기준일 현재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자산의 종류별 평가액과 투자신탁재산 총액에 대한 각각의 비율
 - 해당 운용기간 중 매매한 주식의 총수, 매매금액 및 매매회전율(해당 운용기간 중 매도한 주식가액의 총액을 그 해당 운용기간 중 보유한 주식의 평균가액으로 나눈 비율)
 - 기타 법 시행령 제92조제3항에서 정하는 사항
-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에게 자산운용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수익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 또는 한국에탁결제원을 통하여 기준일부터 2개월 이내에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수익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89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수익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

다. 자산보관·관리보고서

- 투자신탁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는 투자신탁재산에 관하여 투자신탁의 회계기간 종료, 투자신탁의 계약기간 종료 또는 투자신탁의 해지 등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다음의 사항이 기재된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작성하여 수익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 집합투자계약의 주요 변경사항
 - 투자운용인력의 변경
 - 수익자총회의 결의내용
 - 법 제247조제5항 각 호의 사항
 - 법 시행령 제270조제2항 각 호의 사항
- 다만, 수익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수익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다음의 경우에는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수익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수익자가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받기를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한 경우
 - 신탁업자가 신탁업자, 판매회사 및 한국금융투자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법 제230조제3항에 따라 그 수익증권이 상장된 경우만 해당),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공시하는 경우
 - 수익자가 소유하고 있는 수익증권의 평가금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로서 집합투자계약에서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교부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는 경우
- 신탁업자는 수익자에게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수익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를 통하여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수익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89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수익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

라. 기타장부 및 서류

- 집합투자업자·판매회사·신탁업자 및 일반사무관리회사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에 관한 장부 및 서류를 작성하여 본점 및 지점에 비치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합니다.

2) 수시공시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 이를 관련 법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지체 없이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합니다.

가. 신탁계약변경에 관한 공시

-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규약을 변경한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하며, 수익자총회의 결의를 거쳐 집합투자규약을 변경한 경우에는 공시 외에 이를 수익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주1)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가 수익자에 대하여 일간신문에 공고를 하는 때에는 매일경제신문에 공고하되, 2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하는 때에는 한국경제신문에도 공고합니다.

주2) 수익자의 이익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집합투자규약의 단순한 자구수정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관련 법령 또는 금융감독원장의 명령에 따라 집합투자규약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등을 통하여 공시합니다.

나. 수시공시

-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의 사항이 발생한 경우 이를 공시하여야 합니다.

- 투자운용인력의 변경이 있는 경우 그 사실과 변경된 투자운용인력의 운용경력(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을 말합니다.)
- 환매연기 또는 환매재개의 결정 및 그 사유
- 법 시행령 제93조제2항에서 정하는 부실자산이 발생한 경우 그 명세 및 상각률
- 수익자총회의 결의내용
 - 투자설명서의 변경(다만, 법령 등의 개정 또는 금융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변경하거나 집합투자규약의 변경에 의한 투자설명서 변경, 단순한 자구수정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투자운용인력의 변경이 있는 경우로서 법 제123조제3항제2호에 따라 투자설명서를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
- 집합투자업자의 합병, 분할, 분할합병 또는 영업의 양도·양수
- 집합투자업자 또는 일반사무관리회사가 기준가격을 잘못 산정하여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
- 투자신탁이 설정 이후 1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그 사실과 해당 투자신탁이 법 제192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
- 투자신탁이 설정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그 사실과 해당 투자신탁이 법 제192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
- 그 밖에 수익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 수시공시는 다음의 방법으로 합니다.

- 집합투자업자(www.kiwoomam.com), 수익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 및 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는 방법
- 수익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로 하여금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수익자에게 알리는 방법
- 집합투자업자, 수익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의 본점과 지점, 그 밖의 영업소에 게시하는 방법

다. 집합투자재산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공시

-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주식 중 법 제9조제15항제3호가목에 따른 주권상장법인 발행한 주식(법 제9조제15항제3호나목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의 경우에는 주식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의 의결권 행사 내용 등을 다음의 구분에 따라 공시하여야 합니다.

- 법 제8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주요의결사항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내용 및 그 사유
- 의결권공시대상법인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내용 및 그 사유
- 의결권공시대상법인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 :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구체적인 사유

- 집합투자업자는 주주총회일부터 5일 이내에 증권시장을 통하여 의결권 행사내용 등을 공시하여야 합니다.

4. 이해관계인 등과의 거래에 관한 사항

1) 이해관계인과의 거래내역

[단위 : 백만원]

이해관계인		거래의 종류	자산의 종류	거래 금액
성명(상호)	관 계			
키움증권	계열회사	중개거래	주식	23,870

주1) 상기의 거래내역은 집합투자업자가 집합투자업자의 이해관계인과 최근 1년(본 신고서(또는 투자설명서)의 작성 기준일로 부터) 간의 거래내역입니다.

2) 집합투자기구간 거래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습니다.

3) 투자중개업자 선정 기준

구분	선정 기준	
증권	주식 및 인덱스	정보제공 및 주문집행 능력, 자산분석서비스의 유용성을 기준으로 투자중개업자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기반으로 투자중개업자별 배분계획을 수립하여 매매수수료를 배분
	채권	리서치, 거래능력, 중개사 리스크, 백오피스 업무의 신속성/정확도, 매매체결 오류 등의 항목을 기준으로 투자중개업자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기반으로 투자중개업자별 배분계획을 수립하여 배분
장내파생상품	증권의 거래와 유사	

주1) 해외 위탁운용사에 위탁하는 자산의 증권 및 장내파생상품 거래를 위한 중개회사 선정은 해당 위탁운용사의 내부 기준에 따릅니다

주2) 각 항목별 평가항목 등은 관련 법규 또는 당사 내부 가이드라인 변경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5. 외국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추가 기재 사항 해당사항 없습니다.

[붙임] 용어풀이

용 어	내 용
신탁업자	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회사를 말합니다.
집합투자	2 인이상의 투자자에게 투자권유를 하여 모은 자금으로 금융 투자 상품 등에 투자하여 그 운용 성과를 투자자에게 돌려주는 것을 말합니다.
펀드	집합투자를 수행하는 기구로서 법적으로 집합투자기구라 표현되며 통상펀드라고 불립니다. 대표적으로 투자신탁 및 투자회사가 이에 해당합니다.
투자신탁	집합투자업자와 신탁업자간 신탁계약 체결에 의해 만들어지는 펀드를 말합니다.
수익증권	이 펀드에 투자한 투자자들에게 출자비율에 따라 나눠주는 권리증서를 말합니다. 투자신탁에 가입(매입)한다는 것은 이 수익증권을 산다는 의미입니다
순자산	펀드의 운용 성과 및 투자원금을 합한 금액으로서 원으로 표시됩니다.
증권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재산의 50%를 초과하여 증권(주식, 채권 등)에 투자하는 펀드입니다.
주된 투자대상 자산	집합투자계약의 투자목적에 당해 집합투자기구가 주로 투자하는 자산으로 명시되어 있는 자산(주식, 채권, 상품, ELS등)을 말하며, 통상 집합투자재산의 50%이상을 투자하는 자산입니다.
개방형	투자자가 원할 시 언제든지 환매가 가능한 펀드입니다.
추가형	추가로 자금 납입이 가능한 펀드를 말합니다.
종류형	통상 멀티클래스펀드로 불리웁니다. 멀티클래스 펀드란 하나의 펀드 안에서 투자자 그룹(클래스)별로 서로 다른 판매보수와 수수료 체계를 적용하는 상품을 말합니다. 보수와 수수료의 차이로 클래스별 기준가격은 다르게 산출되지만 각 클래스는 하나의 펀드로 간주돼 통합 운용되므로 자산운용 및 평가 방법은 동일합니다.
기준가격	펀드의 가격으로서 매일매일 운용성과에 따라 변경되며 매입 혹은 환매시 적용됩니다.
보수	투자신탁의 운용 및 관리와 관련된 비용입니다. 다시 말해 재산을 운용 및 관리해준 대가로 고객이 지불하는 비용입니다. 이는 통상 연율로 표시되며, 신탁보수에는 집합투자업자보수, 판매회사보수, 신탁업자보수 등이 있습니다. 보수율은 상품마다 다르게 책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선취수수료	펀드 가입 시 투자자가 판매회사에 지불하는 비용입니다.
환매수수료	계약 기간 이전 중도에 펀드를 환매할 시 일정한 벌칙금 형식으로 투자자에게 일회적으로 부과하는 수수료입니다. 이는 펀드 운용의 안정성과 펀드 환매 시 소요되는 여러 비용을 감안하여 책정되며 부과된 수수료는 다시 펀드 재산에 편입되게 됩니다.
설정	집합투자계약에 의거, 신탁업자와 신탁계약을 체결한 후 일정단위의 신탁금을 신탁업자에 납입하는 것을 설정이라고 하며, 신규설정과 추가설정이 있습니다.
해지	펀드를 소멸시키는 행위로서 투자회사의 해산과 유사한 개념입니다.
환매	만기가 되기 전에 맡긴 돈을 되찾아 가는 것을 환매라고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가 채택하고 있는 투신제도상 고객이 중도인출을 요구할 경우 집합투자업자가 이를 받아들여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단위형(폐쇄형) 상품의 경우 일정기까지 중도해약을 금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상장주식의 경우 회사명 또는 코드번호 6 자리를 활용하여 수익자들이 쉽게 공시사항을 조회, 활용할 수 있는 것처럼 펀드 또한 금융투자협회가 부여하는 5 자리의 고유 코드가 존재하며, 펀드명 뿐만 아니라 이러한 코드를 이용하여 펀드의 각종 정보에 대한 조회가 가능합니다.
원천징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할 때, 그 지급자가 그 지급받는 자가 부담할 세액을 미리 국가를 대신하여 징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가 월급을 받을 때 월급(소득)에서 발생하는 세금을 차감한 금액을 받게 됩니다. 이는 월급을 지급하는 회사가 국가를 대신해서 미리 세금을 징수하고 세금 납입일(통상 매달 10 일)에 일괄적으로 국가에 납부하기 때문입니다.
비교지수	벤치마크로 불리기도 하며 펀드 성과의 비교를 위해 정해놓은 지수입니다. 일반적으로 Active 펀드는 그 비교지수 대비 초과 수익을 목표로 하며 인덱스 펀드는 그 비교지수 추종을 목적으로 합니다.